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2.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자료
3.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 및 제출자료
4. 주민의견수렴 결과서 및 설명회 절차
5. 발전사업 허가신청 제출서류
6. 발전설비계획의 작성사항
7. 영농계획의 작성사항
8. 변경허가·변경신고 제출자료 및 절차
9. 발전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제출서류
10. 승계인 사후관리 정기점검 주기 및 범위
11.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 인정 관련 제출서류
12.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사항
13. 준수사항 이행자료의 작성·보관·제출
14. 주민환원계획의 세부사항
15. 원상회복계획서의 작성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 성 자	이름	유소영
	담당부서 (과)	농촌에너지정책과		직급	농업주사보
	국장	강동윤		연락처	044-201-2853
	과장	김소형		이메일	ryuso87@mail.g o.kr

2026. 09. 1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강동윤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농지전용 방식의 농촌 태양광 확산에 따른 농지 훼손·식량안보 우려에 대응하여, 농지에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6.6월)됨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에 관한 기존 규제가 없어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증사업 지침과 민간의 설계 관행에 의존하고 있고, 그 결과 사업자별 설계 편차와 허가권자별 판단 편차가 발생 - 법 제2조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와 기본적인 구조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는 발전설비의 구조·규격, 설치 간격, 차광률, 농기계통행공간, 배수·관수시설, 안전시설 및 원상회복이 가능한 기초·지지구조에 관한 세부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정부개입 필요성) 농지 상부에 장기간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영농 지속 가능성, 농작업자 안전,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은 사후 회복이 곤란하므로 허가 단계에서의 사전 확인이 필요 - 가이드라인 보급·성능인증·컨설팅 등 비규제수단은 허가 요건으로 기능하지 못하여 농지 보전과 영농 지속을 담보할 수 없음		
	7.규제내용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농업과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세부 설치 기준을 정함 (차광률) 모듈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발전사업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분의 30 미만 (구조물 최저높이)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지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지지대 중심 간 거리) 4미터 이상 (시설물 점유면적)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그 밖의 기준) 농기계 통행·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보장, 낙수·토양유실·눈부심 등 영농 피해 방지조치, 전기·구조·화재·		

		풍수해 안전기준 적합, 사업 종료 시 일반적인 방법으로 철거·원상회복이 가능한 구조 안전기준 적합, 사업 종료 시 일반적인 방법으로 철거·원상회복이 가능한 구조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기업·소상공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 (일반국민)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 피규제자 이외 이해관계자 － (기업·소상공인) 태양광 설비 제조·시공업체, 구조·전기 분야 설계사무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폐모듈·폐기물 처리업체 － (일반국민)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 주민, 농지 임대인 ○ 관련기관 － (허가·감독) 시장·군수·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태양광 설비 제조·시공업체, 구조·전기 분야 설계사무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폐모듈·폐기물 처리업체,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 주민, 농지 임대인 등</td><td></td></tr><tr><td>관련기관</td><td>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이해관계자	태양광 설비 제조·시공업체, 구조·전기 분야 설계사무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폐모듈·폐기물 처리업체,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 주민, 농지 임대인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이해관계자	태양광 설비 제조·시공업체, 구조·전기 분야 설계사무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폐모듈·폐기물 처리업체,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 주민, 농지 임대인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발전설비의 범위와 최소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기반을 유지 －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기계 통행 제한, 농작물 생육 저해 및 경작면적 감소를 방지 ○ (기대효과) 사업자·허가권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보완요구 감소, 농작업자 안전사고 및 인접 농지 피해 민원											

		예방, 농지 보전과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의 병행 달성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가. 분석의 기본 정보 ○ (분석방법) 정성분석 (정량분석이 곤란한 사유는 아래 “라.” 참조) ○ (측정 기준) 동 규제는 신설 규제로서 기존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 규제 대비 증가분이 아니라 이 규제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을 측정하였음 －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미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가 규제 시행 이전에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사항은 비용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근거는 아래 “다.”의 각 항목에 기재 나. 피규제자 수 ○ 제도 시행 후 3년간 발전사업 허가 예상 건수 － (모수)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면적 － (1차 축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 — 거주·영농 요건을 갖춘 농업인,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매립지등에 한정) － (2차 축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취득 가능성 및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계통연계 여건 － (3차 축소) 설치·구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의 형상, 집단화 정도 및 농기계 통행 여건 － (하한선) 시행령안 부칙 제6조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기존 실증사업·시범사업 수행자 다. 영향집단별 비용·편익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및 피규제 일반국민 - (직접비용 - 설비) 구조물 최저높이의 상향과 지지대 중심 간 거리의 확대에 따라 지지구조의 자재 규격과 기초 공사의 규모가 증가 - (직접비용 - 외부서비스) 구조검토서의 작성 및 전기 · 구조 · 건축 각 분야 자격자에 의한 설계 도서의 작성 · 확인 - (직접비용 - 행정부담) 발전설비계획, 배치도 · 평면도 · 단면도 · 구조도 · 기초도, 차광률 및 시설물 점유면적 산정자료의 작성 · 제출 - (간접비용) 차광률 및 시설물 점유면적의 제한에 따라 단위면적당 설치용량이 축소되어 발전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 - (직접편익) 허가기준의 명확화로 설계 재작업, 보완요구 및 반려가 감소하고, 종합지원센터의 표준설계 ·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설계비용을 절감 - (직접편익) 허가 단계에서 영농 가능성이 확인됨으로써 사업 개시 후 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 사업정지 · 과징금 · 허가취소의 위험이 감소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산업육성) 영농형에 특화된 지지구조 · 모듈 등 설비 시장이 형성되어 관련 제조 · 시공업체의 사업기회가 확대 - (매출증가) 구조검토, 설계도서 작성, 전기안전관리,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가 발생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비용 절감) 인접 농지의 소유자 · 임차인은 일조 · 통풍 · 배수의 저해와 낙수 · 토양유실에 따른 피해가 방지되어 영농 손실을 회피 - (안전사고 예방) 농기계 통행공간과 농작업자 안전시설의 확보로 발전사업부지 및 인접 농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 - (기타)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기반이 유지되고, 경관 ·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저감되며,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 ○ 정부
--	--	--	--

			- (비용) 발전사업 허가 심사와 현장확인에 소요되는 인력·시간, 세부 판단기준의 고시 제정 및 운영 - (편익) 허가 단계의 판단 기준이 확보되어 심사 부담과 허가 관련 분쟁·민원이 감소하고, 사후 이행점검 및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 라. 정량분석이 곤란한 사유 ○ 제도의 신설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적 이 존재하지 않아 피규제자 수와 단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부재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표준모델이 확정되지 않아 지지구조의 자재비·공사비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차광률에 따른 수확량의 변화가 작물·지역·기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져 편익과 규제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관련 실증연구와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26.7월~10월)이 진행 중 마. 향후 정량화 계획 ○ 수도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행		재검토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허용		20270101~20291231		3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 30조 제2항제1항 및 제3항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 30조 제2항제1항 및 제3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발전설비의 설치기준)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발전설비” 라 한다)의 구조·규격, 설치 간격, 차광률, 농기계 통행공간, 배수·관수시설, 안전시설 및 원상회복이 가능한 기초·지지구조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모듈(이하 “모듈” 이라 한다)은 발전사업부지 전반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편중되지 않게 배치할 것 2. 발전사업부지의 차광률은 모듈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발전사업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고, 100분의 30 미만일 것 3. 발전설비의 구조물 최저 높이는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지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지대의 중심 간 거리는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지지대·기초·인버터·변압설비·접속함 등 발전설비 설치·운영으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곤란하게 되는 면적(이하 “시설물 점유면적” 이라 한다)은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로 할 것 5. 농기계의 진입·회전·작업, 농작업자의 통행, 농업용수의 공급·배수, 농산물의 수확·반출 및 인접 농지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모듈에서의 낙수, 토양유실, 토양다짐, 배수장애, 농업용수 오염, 눈부심 및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영농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7.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 기준, 구조안전 기준, 화재·풍수해 예방 기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8. 발전사업기간 만료, 허가취소, 사용권원 소

현행	개정안
	멸 또는 임대차 종료 시 일반적인 방법으로 발전설비를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출된 서류 또는 자료만으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물별·지역별 영농 여건, 발전설비의 기술 수준, 농지의 보전 상태, 농기계 이용 여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차광률·시설물 점유면적의 산정방법, 구조물 최저 높이·지지대 중심 간 거리의 측정방법, 낙수 피해 방지조치의 기준과 원상회복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발전설비의 구조·규격 또는 안전에 관하여 전기·건축·소방·재난안전·환경 등 관계 법령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따른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이 농지전용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농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 536% 증가

- 농지전용 방식은 해당 농지에서의 농업생산활동이 종료되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지 보전·식량안보 유지가 상충하는 구조
- 아울러 외부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발전수익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어 농업인·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

- **(제도 도입)** 정부는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라는 3대 원칙 아래 농지에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6.16. 제정, 법률 제21804호) 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범위, 발전사업 허가, 준수사항, 제재처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같은 법 제2조제5호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법령명	조문내용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u>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기존 규제 및 자율규제 등의 운영실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에 관한 기존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다음의 비규제적 수단에 의하여만 규율되고 있음

- (실증사업 지침) 실증사업·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민간의 설계 관행) 설비 제조·시공업체별로 상이하고 공개된 표준이 없어 사업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으며, 준수를 강제할 수단도 없음
- (개별 허가권자의 판단)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영농병행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편차가 발생

법령명	조문내용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4. 1. 2., 2026. 3. 17.>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법령명	조문내용
	12. 24.> ④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시행일: 2026. 9. 18.] 제36조

○ (문제점)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실증사업·시범사업 수준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설비가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설비인지에 관한 공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설비 요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실증사업 지침과 민간의 설계 관행에 의존하고 있어, 동일한 여건에서도 사업자별 설계 편차와 허가권자별 판단 편차가 발생
- 그 결과 ▲형식적으로만 농지 상부에 설치되어 실제 영농이 곤란한 설비 ▲농기계의 진입·회전·작업이 불가능한 지지구조 ▲사업 종료 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농지를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기초구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를 허가 단계에서 걸러낼 기준이 없는 상태
- 이는 개별 사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접 농지의 일조·통풍·배수와 농기계 통행에 영향을 미쳐 주변의 농업생산활동까지 저해할 우려

나. 정부개입 필요성

- **(시장실패)** 발전설비의 영농 병행 가능성은 설계·시공 단계에서만 판단할 수 있어 사업자와 허가권자·인접 농업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
 -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기반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고려할 유인이 없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인접 농지의 일조·배수·통행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외부효과에 해당
 -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이 최장 23년에 이르고 농지 훼손과 원상회복 불능은 사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므로, 사후 규율만으로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 **(비규제대안의 한계)** 다음의 비규제적 수단을 검토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
 -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보급)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를 강제할 수 없고, 미준수 설비에 대하여 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함
 - (설비 성능인증) 인증 취득이 임의적이어서 인증을 받지 않은 설비의 설치를 막을 수 없고, 인증 체계 구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
 - (사전컨설팅·교육·홍보) 종합지원센터의 컨설팅은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나 허가 요건으로 기능하지 못함
 - (정책자금·보험 연계 인센티브)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유인이 작동하지 않아 규율의 사각이 발생
- **(개입의 근거)** 법 제2조제5호가 발전설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내용은 발전사업 허가기준(법 제8조 제3항제1호), 준수사항(법 제13조),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법 제15조)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u>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발전사업의 허가)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발전사업부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비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발전설비가 농기계의 운용, 일조량 확보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와 규격을 갖추는 것 2. 발전사업부지에서 영농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주변 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호 및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을 위하여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이 가능할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

법령명	조문내용
	하는 바에 따라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9조에 따른 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 허가 신청·심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발전사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발전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의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조합원이 10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10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주민참여협동조합을 말한다.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허가된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발전사업을 한 경우

법령명	조문내용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내용	시행령에 필수설비 6종과 제외설비 4종을 규정하고 설치 구조 요건을 정한 후, 시행규칙에서 차광률 100분의 30 미만, 구조물 최저높이 2.5미터 이상, 지지대 중심 간 거리 4미터 이상, 시설물 점유면적 100분의 10 이내와 농기계 통행·배수·관수·안전·원상회복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성과기준형 저강도 규제 (수치기준의 고시 위임)
	내용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영농 지속 가능성, 농기계 통행, 농작업자의 안전 및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라는 성과요건만 규정하고, 차광률·높이·간격·점유면적 등 구체적 수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지역·작물·기술 수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필수설비·제외설비의 범위와 차광률·높이·간격·점유면적 기준이 명확하여 사업자와 허가권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고, 허가 단계에서 농업생산 공간과 농작업자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으며, 사후 이행점검과 원상회복의 판단 기준으로도 기능	발전사업부지의 형상과 작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고, 기존 개정 전까지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지연될 수 있음
규제대안2	지역·작물·기술 수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사업자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허가권자의 재량 편차가 커지고 사업자의 예

	의 설계 자율성이 높음	측가능성이 낮으며, 사후 이행점검·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움. 고시 제정 전까지 규율의 공백이 발생
--	--------------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기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에 작물별·지역별 영농 여건, 발전설비의 기술 수준,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 반영 · 같은 조 제3항에 차광률·시설물 점유면적의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의 고시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시공업체	영농형태양광 시공가이드라인 회의 3회 (‘26.5.14., ‘26.6.18., ‘26.6.22.)	· 기후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에 영농형태양광 시공기준(안) 추가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발전설비 설치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 시행규칙안 제2조제1항에 태양광 모듈 배치방식, 차광률, 발전설비 구조물 설치기준, 안전사고 방지기준 등 규정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규제대안 1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의 법령

규정”을 선택

- (근거 1 - 문제 해결의 실효성) 기존 규제가 없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와 일반 지상형 설비를 구분할 기준이 없어 농지 훼손과 영농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없으며, 법 제13조의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의무와 법 제15조의 허가취소·원상회복 규정도 그 판단 기준을 결여하게 되어 제도 전체가 작동하지 않음
- (근거 2 - 규제대안 2와의 비교) 성과기준만 두는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 편차가 커져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고, 시정명령·사업정지·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우며, 고시 제정 전까지 규율의 공백이 발생
 - 다만 규제대안 2의 장점인 탄력성은 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의 종합 판단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고시 위임을 통해 규제대안 1 안에서 상당 부분 흡수하였음
- (근거 3 - 이해관계자 의견) 전문가 회의에서 현장에서의 판단 가능성과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을 위해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수치기준을 법령에 두는 방식과 부합
- (근거 4 - 국내외 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음) 일본은 농지 일시전용 제도에서 지주 높이와 하부 영농 여건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고, 프랑스도 영농병행 태양광의 영농면적 손실 한도와 가역성 요건을 정하고 있어, 이 규정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 있음

- 국내에서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지역과 경사도·면적 등 설치조건을 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6조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원상회복 의무와 복구비용예치를 부과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유사

○ **(규제로서의 성격)** 동 조항은 법 제2조제5호의 위임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동시에 발전사업 허가의 요건을 이루어 사업자의 설계선택을 제한하는 신설 규제에 해당함

- 다만 그 수준은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설정하였고, 지역·작물·기술 수준을 고려한 종합 판단 규정과 고시 위임을 통해 경직성을 완화하였음

3. 규제목표

○ **(주된 목표)**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지속되어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기반이 유지되는 상태

- (지표 1) 영농 이행률: 시행령안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 또는 재배” 수준의 충족 비율
- (지표 2) 발전사업부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인근 일반 농지 대비 차지하는 비율
- (지표 3) 발전사업 종료·허가취소 시 농지 원상회복 이행률

○ **(부수 목표)**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사업자·허가권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농작업자·인접 농지의 안전 확보

- (지표 4) 발전사업 허가 처리기간 및 보완요구 비율
- (지표 5) 발전설비 관련 안전사고 건수 및 인접 농지 피해 민원 건수
- (측정 방법) 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2년 주기), 시행령안 제24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확인(연 1회 이상),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축적자료를 통해 측정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가. 규제수단의 최소성

- 각 기준은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한 물리적 최소 요건으로서 다음의 근거에 따라 설정하였음

기준	설정 근거	완화가 곤란한 사유
차광률 100분의 30 미만	시행령안 제19조제1항제1호는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 또는 재배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시행규칙안 제2조제1항제1호는 모듈을 발전사업부지 전반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편중되지 않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규정을 함께 적용하면 모듈 하부에서도 경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듈의 수평투영면적이 발전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조물 최저높이(2.5미터 이상)와 지지대 중심 간 거리(4미터 이상)를 함께 적용할 때 확보 가능한 모듈 배치 밀도를 고려하여 설정	차광률을 완화할 경우 모듈을 편중되게 배치하지 않고서는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경작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시행령안 제19조제1항의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 및 법 제13조제1항의 영농 의무와 상충하게 되며, 모듈 하부의 광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파종·재배관리·수확이 곤란해질 우려
구조물 최저높이 2.5미터 이상	트랙터·콤바인·방제기 등 주요 농기계의 전고 및 작업 시 필요한 상부 여유고, 일본 가이드라인의 지주 높이 기준	이보다 낮은 경우 농기계의 진입·작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발전사업부지 전반의 영농이 곤란
지지대 중심 간 거리 4미터 이상	주요 농기계의 작업폭 및 회전반경, 농작업자의 통행과 농산물 수확·반출 동선	간격이 좁을수록 농기계의 회전이 불가능한 구간이 늘어나 실제 경작 가능 면적이 축소
시설물 점유면적 100분의 10 이내	시행령안 제19조제1항제1호가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 또는 재배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정합적인 수준으로 설정. 이와 함께 영농병행 태양광에 관하여 영농면적의 손실 한도를 정하고 있는 프랑스 등의 사례에 비추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	점유면적이 100분의 10을 넘으면 영농 이행 기준(100분의 80) 충족에 필요한 여유가 사라져 두 기준이 상충하게 됨

나. 비례성 판단 요소

- (영향을 받는 집단의 규모) 피규제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영향 범위가 제한적
- (영향의 발생 기간 및 분포) 규제의 영향은 발전설비의 설계·시공 단계에 집중되며, 이후에는 허가기간(최초 5년, 연장 최장 18년) 동안 유지관리 의무의 형태로 지속됨
 - 특정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영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음
- (집단 간 이해충돌의 정도) 발전사업자와 인접 농지 경작자(일조·통풍·배수 및 농기계 통행), 농지 임대인과 임차인(원상회복 책임), 사업자와 지역주민(경관·안전) 사이에 이해가 충돌할 수 있음
 - 동 기준은 이러한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개별 분쟁과 민원으로 전가되어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

다. 경직성 완화 장치

- 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 — 제출된 서류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작물별·지역별 영농 여건, 발전설비의 기술 수준, 농지의 보전상태, 농기계 이용 여건 및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
- 시행규칙안 제2조제3항 — 차광률·시설물 점유면적의 산정방법, 구조물 최저높이·지지대 간격의 측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여

기술 발전에 대응

- 시행규칙안 제2조제4항 — 전기·건축·소방·재난안전·환경 등 관계 법령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중복·상충 규제를 방지
- 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6호 — 열거되지 않은 설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개방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 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의 범위 및 설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제품·서비스의 국가표준·인증 또는 기술요건을 신설하는 규제로서 기술규제 영향평가 대상은 아님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 등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규제 차등화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정책목표를 비강제적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음

- 설비 성능인증과 정책자금·보험 연계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농지의 훼손과 농작업자의 안전은 사후 회복이 곤란한 손실에 해당하여 허가 단계의 사전 기준설정이 불가피

- 다만 법 제21조(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제23조(컨설팅 등의 지원), 제24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를 통해 유인적 수단을 병행하여 규제부담을 완화

법령명	조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정부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컨설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설비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전설비 하부의 적정 작물 및 재배기술 연구·개발 2.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성 제고 및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발전설비의 연구·개발 3. 그 밖의 발전설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법령명	조문내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일몰설정 여부

재검토기한 설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은 2027년 1월1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검토기한 설정)**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역별·작물별 사업여건과 적정 사업규모에 관한 경험 축적이 되지 않는 만큼, 실제 운영결과에 따라 제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일몰설정 여부	일몰조문	신규설정 여부	일몰유형	설정기간	주기
설정	시행령안 제44조제1호 시행규칙안 제30조제1호	신규	재검토기한	3년	3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차광률, 구조물 높이, 지지대 간격 등 설치기준은 허가 단계에서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포괄적 개념 정의 방식의 적용이 곤란함
유연한 분류 체계	O	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의 작물별·지역별 영농 여건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한 종합 판단 규정, 같은 조 제3항의 고시 위임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설비와 기술 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네거티브 리스트		허용되는 설비·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규제가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준수하여야 할 최소기준을 정하는 규정 이므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적용이 곤란함
사후 평가관리	O	허가 단계의 사전 확인과 함께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감독을 통한 사후관리를 병행함
규제 샌드박스		별도의 실증특례보다는 기존 시범·실증사업 및 재검토기한을 활용하여 기준의 적정성을 지속 검증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일본) 농림수산성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한 농지 전용 허가 제도상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2024년~)을 통해 농업기계와 농업인이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주의 높이를 약 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지지대의 높이·간격 등이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
- 아울러 하부 농지의 수확량 확보 요건과 농지 일시전용 허가기간 및 갱신 요건을 함께 규정
- (프랑스) 「영농형태양광 개발 및 농업·자연·산림지역 태양광 설치 조건에 관한 시행령」(2024)에서 영농병행 태양광의 요건으로 비교부지 대비 수확량 유지 수준, 설치 전후 농업소득 유지, 사후 점검 및 통계 제출 의무를 규정
- (규제방식의 차이) 일본과 프랑스는 수확량 또는 농업소득이라는 사후 성과 기준으로 영농 병행 여부를 규율하고 있어, 발전설비의 차광률이나 점유면적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이 규정은 사후 수확량 확인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농지 훼손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면적 비율 기준(차광률, 시설물 점유면적)으로 규율하고, 수확량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안 제19조의 영농 이행 기준과 제21조의 재배 제한 작물 제도로 별도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 따라서 해외의 수확량 유지 기준은 이 규정이 아니라 영농 이행 기준에 대응하며, 규율 시점과 수단이 다를 뿐 영농 병행 확보라는 목적과 수준에서는 국제적 기준과 부합함

○ 타법사례

-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하여 경사도 15도, 면적 3만제곱미터 등의 정량적 기준을 이미 두고 있어, 정량적 설치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국내 법체계에서 이례적이지 않음

구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이 규정 (시행령안 §3·시행규칙안 §2)
대상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행위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등	농지 상부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조건· 기준	사용목적·사용기간의 적 정성, 농지의 보전 및 인 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평균경사도 15도 이하,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 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토사유출 방지 및 하단 주변 수목·초본류 식재계 획 수립	차광률 100분의 30 미 만, 구조물 최저높이 2.5 미터 이상, 지지대 중심 간 거리 4미터 이상, 시 설물 점유면적 100분의 10 이내, 농기계 통행·배 수·관수 및 안전 확보
원상회복	사용기간 만료 시 원상 회복 의무 및 복구비용 의 예치·반환	일시사용기간 만료 후 복구	일반적인 방법으로 철거· 원상회복이 가능한 기초· 지지구조를 요구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법」 의 복구비용 관련 규정 을 준용
규제 수준	면적·경사도 등 물리적 기준을 두지 않고 심사 기준으로 규율	경사도·면적 등 정량적 기준을 직접 규정	정량적 기준을 규정하되, 종합 판단 규정과 고시 위임으로 탄력성을 확보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발전설비의 범위가 명확히 열거되어 있고 설치기준이 차광률·높이·간격·면적 비율이라는 측정 가능한 수치로 제시되어 있어, 도면과 산정자료로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허가 전에 보완이 가능하고(시행령안 제11조제2항 단서), 통상적인 설계·시공 능력을 갖춘 사업자는 준수가 가능한 수준

-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예상 장애요인	해소방안
개인 농업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구조검토서·설계도서 작성 역량 부족	법 제23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및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지원센터의 기술지원·표준설계 보급. 시행령안 제37조제3항제2호는 발전설비계획의 수립 지원을, 같은 항 제3호는 발전설비의 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지원을 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
기존 실증사업·시범사업의 설비가 신설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	시행령안 부칙 제6조는 기존 실증·시범사업 수행자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 이미 제출·확인된 자료의 재제출을 면제하고, 시행규칙안 부칙 제3조는 기존에 작성·제출된 발전설비계획·안전관리 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지역·작물별 영농 여건의 차이로 획일적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의 종합 판단 규정 및 같은 조 제3항의 고시를 통해 산정·측정방법과 판단 참고기준을 구체화
관계 법령상 기준과의 중복·상충 우려	시행규칙안 제2조제4항은 전기·건축·소방·재난안전·환경 등 관계 법령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상충을 방지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허가권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로서 전기·구조 분야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의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 (전문기관 의견청취) 시행령안 제10조제5항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종합지원센터, 감독대행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
 - － (자격자 작성·확인) 시행규칙안 제9조제2항은 발전설비계획에 전기·구조·건축 각 분야 자격자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설계도서와 구조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 (종합 판단) 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은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함
 - － (지원 조직)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와 시행령안 제40조에 따른 감독대행기관이 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을 지원
 - － (정보 인프라) 법 제20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허가·설비·영농 자료를 축적·연계하여 심사와 사후관리의 일관성을 확보
- 허가 처리기간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법 제8조 제5항), 보완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심사 여건이 확보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의 농지 관리·인허가 체계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조직 신설은 필요하지 않으나, 다음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할 계획
- (기준 마련) 시행규칙안 제2조제3항 및 시행령안 제11조제4항에 따른 세부 판단기준·산정방법 고시의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정보시스템) 법 제20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 (지원 조직)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 법 제25조제3항에 지원 근거
- (감독대행) 감독대행기관에 대한 대행 비용 — 법 제26조제5항에 지원 근거
- 위 소요는 제도 도입에 따른 공통 비용으로서 이 조항에 고유하게 귀속되는 추가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며, 허가 단계의 기준 명확화로 분쟁·민원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농가소득 제고, 식량안보 유지를 위한 농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24.4, 탄녹위 전체회의)
-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맞추어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 및 체계적 확산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농촌재생에너지 확산 필요성 대두
 - * 국정과제 70-2.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농어촌 에너지 자립' 이행
(재생에너지 확산)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
- 농업인·농촌주민의 소득 제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 ('26.6.16)

시기	내용
('26.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6. 6.	하위법령 입안 착수 및 시행령·시행규칙 초안 마련
'26. 6. 12. '26. 6. 18.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2회) -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참석
'26. 7. ~ 10.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실시
'26. 8. 1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
'26. 8. 31.	하위법령 관련 농협 조합장 회의

2. 향후 평가계획

- (평가시점) 시행령안 제44조제1호 및 시행규칙안 제30조제1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에 맞추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사후평가를 실시
 -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와 초기 허가 사례가 축적되는 제도 시행 2년차에 중간 점검을 병행

○ (평가방법)

- 법 제19조 및 시행령안 제32조에 따른 실태조사(2년 주기) — 발전설비의 종류·용량·구조·차광률·설치연도, 재배 작물·재배면적·수확량 및 영농 지속성, 안전관리·사고·민원·원상회복 현황을 조사
- 시행령안 제24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확인(연 1회 이상) 결과의 분석
- 법 제20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축적자료 및 시범사업(수도권 2개소) 결과 분석

○ (평가지표)

- 영농 이행을 —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실제 경작 기준 충족 비율
- 발전사업부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인근 일반 농지 대비 차지하는 비율
- 발전사업 종료·허가취소 시 농지 원상회복 이행을
- 발전사업 허가 처리기간 및 보완요구 비율
- 발전설비 관련 안전사고 건수 및 인접 농지 피해 민원 건수

- (환류) 평가 결과 기준의 완화·강화가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및 고시의 개정을 통해 정비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권역별 설명회와 농업인 대상 교육·컨설팅을 병행

3. 규제 정비계획

- 규제의 신설로 발생하는 피규제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하여 같은 법령에 다음의 절차 간소화 및 부담 경감 규정을 함께 마련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업여건과 적정 사업규모에 관한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은 만큼, 실제 운영 결과에 따라 제한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발전사업 허가 시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의제하여,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	법 시행일 (‘26. 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이미 제출되어 보관 중인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재제출 요구를 금지	법 시행일 (‘26. 12.)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부칙 제6조 / 부칙 제3조	기존 실증사업·시범사업에서 작성·제출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안전관리 자료 등으로 이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갈음	법 시행일 (‘26. 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및 산정, 측정기준 완화 검토	법 시행일 (‘26. 12.)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발전사업 허가 시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의제하여,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	법 시행일 (‘26. 1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항제1항 및 제3항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및 산정, 측정기준 완화 검토	법 시행일 (‘26. 12.)

4. 종합결론

-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지 보전·식량안보 유지와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으로, 그 성패는 발전사업부지에서 영농이 실제로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음
- 시행령안 제3조와 시행규칙안 제2조가 정하는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은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차광률·구조물 최저높이·지대 간격·시설물 점유면적은 각각 작물의 생육, 농기계의 진입·작업, 실제 경작 면적의 확보라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설정되었음
 - 특히 시설물 점유면적 기준(100분의 10 이내)은 시행령안 제19조 제1항제1호의 영농 이행 기준(100분의 80 이상)과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두 기준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영농 의무의 이행이 가능
- 기존 규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현행유지안은 농지 훼손과 영농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없고, 성과기준만 두는 규제대안 2는 허가권자의 재량 편차와 제재 기준의 공백을 초래하므로, 규제대안 1이 최적의 대안임
- 규제의 수준은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의 영농병행 태양광 기준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농지법」 등 국내 유사입법의 규제수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아니하며, 종합 판단 규정과 고시 위임, 관계 법령 우선 규정을 통해 경직성과 중복 규제의 우려를 해소하였음

- 아울러 재검토기한(2027년 1월 1일부터 3년)을 설정하여 실증연구와 기술 발전의 결과를 반영해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동 규정은 농지 보전과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의 동시 달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가. 분석의 기본 정보

- (분석방법) 정성분석 (정량분석이 곤란한 사유는 아래 “라.” 참조)
- (측정 기준) 동 규제는 신설 규제로서 기존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 규제 대비 증가분이 아니라 이 규제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을 측정하였음
 -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미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가 규제 시행 이전에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사항은 비용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근거는 아래 “다.”의 각 항목에 기재

나. 피규제자 수

- 제도 시행 후 3년간 발전사업 허가 예상 건수
 - (모수)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면적
 - (1차 축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 — 거주·영농 요건을 갖춘 농업인,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매립지등에 한정)
 - (2차 축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취득 가능성 및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계통연계 여건

- (3차 축소) 설치·구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의 형상, 집단화 정도 및 농기계 통행 여건
- (하한선) 시행령안 부칙 제6조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기존 실증사업·시범사업 수행자

다. 영향집단별 비용·편익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및 피규제 일반국민

- (직접비용 - 설비) 구조물 최저높이의 상향과 지지대 중심 간 거리의 확대에 따라 지지구조의 자재 규격과 기초 공사의 규모가 증가
- (직접비용 - 외부서비스) 구조검토서의 작성 및 전기·구조·건축 각 분야 자격자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확인
- (직접비용 - 행정부담) 발전설비계획, 배치도·평면도·단면도·구조도·기초도, 차광률 및 시설물 점유면적 산정자료의 작성·제출
- (간접비용) 차광률 및 시설물 점유면적의 제한에 따라 단위면적당 설치용량이 축소되어 발전수익이 감소할 가능성
- (직접편익) 허가기준의 명확화로 설계 재작업, 보완요구 및 반려가 감소하고, 종합지원센터의 표준설계·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설계비용을 절감
- (직접편익) 허가 단계에서 영농 가능성이 확인됨으로써 사업 개시 후 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사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의 위험이 감소

○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 (산업육성) 영농형에 특화된 지지구조·모듈 등 설비 시장이 형성되어 관련 제조·시공업체의 사업기회가 확대
- (매출증가) 구조검토, 설계도서 작성, 전기안전관리,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가 발생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비용 절감)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은 일조·통풍·배수의 저해와 낙수·토양유실에 따른 피해가 방지되어 영농 손실을 회피
- (안전사고 예방) 농기계 통행공간과 농작업자 안전시설의 확보로 발전사업부지 및 인접 농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
- (기타)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기반이 유지되고, 경관·환경에 대한 영향이 저감되며,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

○ 정부

- (비용) 발전사업 허가 심사와 현장확인에 소요되는 인력·시간, 세부 판단기준의 고시 제정 및 운영
- (편익) 허가 단계의 판단 기준이 확보되어 심사 부담과 허가 관련 분쟁·민원이 감소하고, 사후 이행점검 및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

라. 정량분석이 곤란한 사유

- 제도의 신설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피규제자수와 단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부재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표준모델이 확정되지 않아 지지구조의 자재비·공사비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차광률에 따른 수확량의 변화가 작물·지역·기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져 편익과 규제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관련 실증연구와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26.7월~10월)이 진행 중

마. 향후 정량화 계획

○ 수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지지구조의 규격과 기초 공사 설치
비용항목	설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구조물 최저높이의 상향과 지지대 중심 간 거리의 확대에 따라 지지구조의 자재 규격과 기초 공사의 규모가 증가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설계도서의 작성 및 확인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구조검토서의 작성 및 전기·구조·건축 각 분야 자격자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확인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발전설비계획, 배치도 등 산정 자료 작성 및 제출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발전설비계획, 배치도·평면도·단면도·구조도·기초도, 차광률 및 시설물 점유면적 산정자료의 작성·제출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	--

활동제목	허가기준 명확화
편의항목	허가기준 명확화로 인한 설계 비용 감소에 따른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허가기준의 명확화로 설계 재작업, 보완요구 및 반려가 감소하고, 종합지원센터의 표준설계·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설계비용을 절감

(정성)영향집단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허가기준 명확화
편의항목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 감소에 따른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허가 단계에서 영농 가능성이 확인됨으로써 사업 개시 후 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사업정지·과징금·허가 취소의 위험이 감소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주민참여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개인 농업인
활동제목	점유면적 제한에 따른 발전수익 감소
비용항목	기회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차광률 및 시설물 점유면적의 제한에 따라 단위면적당 설치용량이 축소되어 발전수익이 감소할 가능성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태양광 설비 제조·시공업체, 구조·전기 분야 설계사무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폐모듈·폐기물 처리업체
활동제목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의 법령 규정
편의항목	영농형 태양광 설비 관련 업체의 매출 증대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산업육성) 영농형에 특화된 지지구조·모듈 등 설비 시

	장이 형성되어 관련 제조·시공업체의 사업기회가 확대 － (매출증가) 구조검토, 설계도서 작성, 전기안전관리,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가 발생
--	---

③정부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활동제목	발전사업 감독 및 고시 제정 및 운영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발전사업 허가 심사와 현장확인에 소요되는 인력·시간, 세부 판단기준의 고시 제정 및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활동제목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의 법령 규정
편익항목	사전적 사회적 갈등 해소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허가 단계의 판단 기준이 확보되어 심사 부담과 허가 관련 분쟁·민원이 감소하고, 사후 이행점검 및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

④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발전설비의 범위 및 설치·구조 기준의 법령 규정
편익항목	영농 손실 회피, 안전사고 예방,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비용 절감)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은 일조·통풍·배수의 저해와 낙수·토양유실에 따른 피해가 방지되어

	영농 손실을 회피 - (안전사고 예방) 농기계 통행공간과 농작업자 안전시설의 확보로 발전사업부지 및 인접 농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 - (기타)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기반이 유지되고, 경관·환경에 대한 영향이 저감되며,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자료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조 제10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발전사업부지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인이 해당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개입 필요성) 동 조항은 허가 이후 토지소유자·임차인 간 분쟁, 사용권원 상실, 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발전사업부지의 적합 여부와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 관련 공부, 부지요건 및 사용권원 증빙자료 등을 제출 ○ 발전사업부지의 적합성과 사용권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번별 조서, 등기사항증명서, 농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사용권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 동의 및 임대차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발전사업부지의 적합성과 적법한 사용권원을 허가단계에서 확인하여 부적합 부지에 대한 허가 및 토지권원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목표: 사업부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허가 단계에서 확인함 ○ 기대효과: 무단 농지 사용 및 사용권원 분쟁을 예방하고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발전사업부지의 적합성 및 사용권원확인을 위한 토지 관련 서류 발급·확인·정리 등에 행정적·시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편익) 부지의 적법성과 사용권원을 사전에 확인하여 토지분쟁 및 사업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함 -(종합) 발전사업부지의 적합성과 장기간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행정부담에 비해 사업 안정성 확보에 따른 편익이 큼 발전사업부지의 지번별 현황, 농지 관련 공부, 토지이용 현황과 소유권·임차권·사용대차권 등 사용권원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허가 이후 부지 권원 분쟁이나 사업 중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특히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와 임대차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여 임차농의 권리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부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신청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농지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황사진 및 권원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자료 발급·정리 및 확인에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자료는 발전사업 허가의 기초가 되는 부지의 적법성과 사업기간 중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자료이며, 기존 보유·발급 가능한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 보기는 어려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사업부지의 지번별 조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현황사진 2. 발전사업부지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발전사업부지의 소유권·임차권·사용대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권원을 증명하는 자료 4. 임차농지의 경우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갱신 가능성 및 법 제18조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발전사업부지가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발전사업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 제1항의 자료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같은 소유자·임대인 또는 같은 사용권원에 속하는 필지는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요건 중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12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로 확인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장기간 영농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허가단계에서 발전사업부지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신청인이 해당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발전사업부지의 적합성 또는 사용권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간 분쟁, 임대차 종료에 따른 사업 중단, 원상회복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공적 장부와 권원 증빙자료를 통해 허가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
	내용	발전사업부지의 적합 여부와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 관련 공부, 부지요건 및 사용권원 증빙자료 등을 제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및 허가심사의 일관성 확보	발전사업자가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는데 시간·비용이 소요됨

o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발전사업부지와 사용권원은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사항이므로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허가권자 별로 개별 자료를 요구하도록 할 경우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반복적인 보완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	하위법령 반영

		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발전사업부지의 적합성과 적법한 사용권원을 허가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토지권원 관련 분쟁 및 사업 중단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도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제출자료는 발전사업부지의 적합 여부와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음. 특히 둘 이상의 필지가 같은 소유자·임대인 또는 같은 사용권원에 속하는 경우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요건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여 동일·유사 자료의 반복 제출 부담을 최소화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조항은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 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	-------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법」에 따른 일시전용허가를 받고록 하고 있으며, 발전설비 설치자와 영농자가 다른 경우 농지 상부 공간의 이용권 설정 등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고록 하는 등 사업부지 및 토지 이용권원을 확인하고 있음.
- (프랑스) 농지 내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 시 농지의 적합성 및 농업활동과의 양립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허가절차 운영

○ 타법사례

-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 규정

< 참고 : 농지법 시행령 >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5년 이내
 - 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5년 이내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 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6개월 이내
4. 삭제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5년. 이 경우 1회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3년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토지·농지 관련 공부, 사용권원 증명 및 소유자 동의서는 등기·행정 자료와 계약관계에서 확보할 수 있음. 동일한 권원은 일괄 작성할 수 있어 서류 준비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허가권자가 발전사업 허가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지 및 사용권원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어 별도의 행정조직이나 추가 인력없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허가업무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별도의 추가 예산이나 재정 소요가 크지 않아 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시행규칙 제5조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새로운 부지 또는 사용권원 요건을 추가하는 규제가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한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요건을 허가단계에서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규정임
- 제출자료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동일한 사용권원에 속하는 필지는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허가의 적정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발전사업부지의 적합성 및 사용권원확인을 위한 토지 관련 서류 발급 · 확인 · 정리 등에 행정적 · 시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편익) 부지의 적법성과 사용권원을 사전에 확인하여 토지분쟁 및 사업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함
- (종합) 발전사업부지의 적합성과 장기간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행정부담에 비해 사업 안정성 확보에 따른 편익이 큼

발전사업부지의 지번별 현황, 농지 관련 공부, 토지이용 현황과 소유권 · 임차권 · 사용대차권 등 사용권원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허가 이후 부지권원 분쟁이나 사업 중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특히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와 임대차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여 임차농의 권리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부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신청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농지대장, 지적도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황사진 및 권원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자료 발급 · 정리 및 확인에 행정적 · 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자료는 발전사업 허가의 기초가 되는 부지의 적법성과 사업기간 중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자료이며, 기존 보유 · 발급 가능한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발전사업부지 적합성 및 사용권원 확인자료 구비
비용항목	지번별 조서 및 토지 관련 공부 확인·발급, 부지요건 충족 여부 확인, 소유권·임차권·사용대차권 등 사용권원 증빙, 임차농지의 임대인 동의 및 임대차 지속 가능성 확인 등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허가신청 전 발전사업부지의 적합성과 사용권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발급·정리·확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신청건수, 자료별 발급비용 및 소요시간에 관한 객관적 기초자료가 없어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적법하고 안정적인 발전사업부지 확보 및 허가절차 진행
편익항목	부지 권원 분쟁 및 허가 후 사업중단 위험 감소, 임차농 보호, 부적합 부지의 사전 배제, 장기적인 영농·발전사업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허가 단계에서 부지 적합성과 사용권원의 존속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사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지분쟁·권원 상실에 따른 사업차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 수행 기반을 확보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 및 제출자료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 · 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 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동 조항은 발전사업자가 최초 발전사업 허가 이후 발전사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7.규제내용	○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발전사업자는 기존 허가증, 연장기간 · 사유, 사용권원, 최근 준수사항 이행자료, 전기안전 관련 자료, 주민환원 실적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 이미 행정기관이 보유하거나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시장 · 군수 · 구청		
	9.규제목표	○ 목표: 기간연장 전에 기존 사업자의 영농 · 안전 · 주민환원 등 의 무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함 ○ 기대효과: 성실하게 운영되는 사업은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부실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사용권원 유지, 준수사항 이행실적, 안전관리, 주민환원 및 원상회복 관련 자료를 준비 · 제출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편익) 연장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함		

		-(종합) 기존 제출자료와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중복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적격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연장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규제임 발전사업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사유, 부지 사용권원 유지, 준수 사항 이행실적, 전기사업 및 전기안전 관련 상태, 주민환원 실적, 원상회복 비용 확보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영농과 발전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최3년간 준수사항 이행자료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영농의무 이행 수준을 확인하므로 형식적 연장을 방지하고 농지 보전과 안정적인 발전사업 운영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 사업자는 연장신청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정리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허가대장·행정정보 및 이미 제출된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동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따라서 연장신청에 따른 비용은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제한적 행정비용인 반면, 적법한 사업기간 연장과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 확보에 따른 편익은 연장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이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이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해당없음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발전사업기간 연장) ①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허가증 2. 연장하려는 기간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3.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이 연장기간 동안 유지됨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임차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가능성 및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4. 발전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5. 최근 3년간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자료. 다만, 최초 허가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행자료로 한다.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점검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민환원 의무가 있는 경우 주민환원 실적 및 향후 이행계획 8. 원상회복 비용의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심사할 때 기존 허가대장, 준수사항 이행 확인 결과 및 관계 행정정보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중 제2항에 따른 자료, 이미 제출되어 보관 중인 자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시 제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최신 상태가 아니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 허가증에 연장사항을 적거나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7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간의 세부사항에 관한 위임 규정으로서 지속적인 영농의무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이 필요
 -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최초 발전사업허가 이후 사업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 및 제출자료
	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하려는 기간 및 그 사유, 부지의 사용권원이 유지됨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 목록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발전 사업과 농업생산활동 유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	발전사업자가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는데 시간·비용이 소요됨

○ 대안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심사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기준의 구체화 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 및 심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연장하려는 기간 및 그 사유, 부지의 사용권원이 유지됨을 증명하는 서류, 준수사항 이행자료 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하위법령 반영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발전사업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업기간 연장 기준 설정 필요
 - 사업자의 발전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 이행자료 등 근거 서류 목록 마련은 필수적이며,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자료 목록(연장 기간·사유, 부지 사용권원 유지 증

명 서류, 원상회복 비용 확보 여부 서류 등)은 발전사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

「영농형태양광법」 발전사업 기간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위임사항	「영농형태양광법」 시행규칙 위임사항
제7조(발전사업의 기간)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부지에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8조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년 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발전사업의 기간)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발전사업의 최초 허가기간은 허가일부 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기간,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 존속기간 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가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의 총합은 1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가 천재지변, 재난,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실적 2. 농업생산활동의 계속 가능성 및 발전설비의 안전성 3.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 및 임대차계약의 존속 가능성 4. 주민환원 의무가 있는 경우	제6조(발전사업기간 연장) ①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허가증 2. 연장하려는 기간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3.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이 연장기간 동안 유지됨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임대차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가능성 및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4. 발전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5. 최근 3년간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자료. 다만, 최초 허가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행자료로 한다.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점검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민환원 의무가 있는 경우 주민환원 실적 및 향후 이행계획

	그 이행 실적 및 향후 이행 가능성 5. 농지의 보전상태, 원상회복 가능성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 여부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계통연계 및 전기안전 관련 절차의 유지 여부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의 방법, 연장 여부의 심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 원상회복 비용의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심사할 때 기존 허가대장, 준수사항 이행 확인 결과 및 관계 행정정보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중 제2항에 따른 자료, 이미 제출되어 보관 중인 자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시 제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최신 상태가 아니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 허가증에 연장사항을 적거나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	--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간 연장은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지속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 필수 제출 서류 및 심사 절차는 발전사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발전사업기간 연장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발전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발전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발전사업기간 연장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발전사업기간 연장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프랑스) 발전사업 허가 기간은 40년으로, 허가 기간 종료 시점에 여전히 수익성이 보장되면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타법사례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및 관련 서류 제출 의무 규정

< 참고 : 농지법 시행령 >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5년 이내
 - 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5년 이내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 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6개월 이내
4. 삭제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5년. 이 경우 1회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3년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연장신청에 필요한 허가증, 사용권원, 준수실적 및 전기설비 검사 자료는 사업 운영 중 통상 보유·관리하는 자료임. 행정기관이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재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허가대장, 사용권원 및 준수사항 이행자료 등을 확인하여 연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연장심사 및 행정정보를 활용하므로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연장을 위한 필요 서류 및 심사 기준은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병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특히 농지 보전, 식량 안보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확인사항으로 적정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 및 제출자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사용권원 유지, 준수사항 이행실적, 안전관리, 주민환원 및 원상회복 관련 자료를 준비·제출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편익) 연장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함
- (종합) 기존 제출자료와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중복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격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연장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규제임

발전사업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사유, 부지 사용권원 유지, 준수사항 이행실적, 전기사업 및 전기안전 관련 상태, 주민환원 실적, 원상회복 비용 확보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영농과 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최3년간 준수사항 이행자료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영농의무 이행 수준을 확인하므로 형식적 연장을 방지하고 농지 보전과 안정적인 발전사업 운영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함. 사업자는 연장신청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정리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허가대장·행정정보 및 이미 제출된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동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따라서 연장신청에 따른 비용은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제한적 행정비용인 반면, 적법한 사업기간 연장과 장기적인 사업 안

정성 확보에 따른 편익은 연장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 및 제출자료>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 자료 확인·정리 및 제출
비용항목	연장기간·사유 작성, 사용권원 유지 증빙, 최근 준수사항 이행자료 정리, 전기사업·전기안전 상태 확인, 주민환원 실적·계획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자료 준비 등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연장신청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확인·정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제3항에 따라 기존 허가대장, 관계 행정정보, 이미 제출된 자료 등을 우선 활용하고 중복제출을 제한하므로 실제 추가부담은 신규·변경 자료 중심으로 발생함.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연장기준 충족 확인을 통한 발전사업의 연속적 수행
편익항목	연장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영농의무 이행 사업자의 사업 지속성 확보, 권원·안전·주민환원·원상회복 관련 위험의 사전 점검, 행정·사업 공백 감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연장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준과 제출자료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는 연장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지속적인 영농과 발전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연장할 수 있어 연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업 수행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주민의견수렴 결과서 및 설명회 절차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5 제9조의 7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동 조항은 발전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하는바, 그 절차 및 방식 등 규정 필요		
	7.규제내용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부지 대상 주민 의견수렴 절차 －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에 사업개요, 공고내용, 주민설명회 결과, 제출의견 및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주민설명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시·장소 등을 공고하고 사업내용 및 영향 저감대책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시장·군수·구청		
	9.규제목표	○ 목표: 시행령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과서 작성과 설명회 운영방법을 구체화함 ○ 기대효과: 의견수렴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사업내용 공고·열람,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정리 및 결과서 작성 등에 행적적·시간적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 －(편익)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여 사업 초기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향후 민원·분쟁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종합)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업 중단 및		

		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규제임 발전사업 공고·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여 향후 집단민원 및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대안 검토 결과 및 주민 의견에 따라 변경된 발전설비계획·영농계획 등을 결과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인·허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공사 지연·중단 및 추가 협의 위험을 낮추어 사업의 장기적·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공고·열람, 설명자료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및 결과서 작성 등에 행정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민 수용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비용임.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 의견수렴) ① 신청인이 영 제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 사업명, 사업위치, 부지면적, 발전용량 및 사업기간 2. 공고기간, 공고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자료의 주요 내용 3.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경우 그 일시·장소, 참석자 수, 설명자료 및 질의·답변 요지 4.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및 대안 검토 결과 5.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인접 읍·면·동 주민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추가 통지·협의 내용 6. 주민 의견수렴 결과 변경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또는 피해방지대책 7. 공고문, 게시사진, 참석자 명부, 회의록, 제출 의견 사본, 설명자료 등 주민 의견수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신청인은 설명회 개최 14일 전까지 설명회의 일시·장소·주요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을 해당 시·군·구와 읍·면·동의 인터넷 홈페이지, 발전사업부지가 속한 리·동의 게시판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주민설명회에서 발전사업의 위치·규모·기간, 발전설비의 배치·구조·안전관리, 영농계획, 농기계 이용계획, 인접 농지 영향 저감 대책, 경관·환경·재해·생활환경 영향 및 주민 환원계획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신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주민설명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대체 의견수렴 방법을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에 적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대상 주민 의견수렴 의무에 관한 위임 규정이며,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업 부지를 포함한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알려 사전에 의견수렴할 의무가 있고,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주민의견수렴 결과서 및 설명회 절차
	내용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부지를 포함한 읍·면·동 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발전사업의 내용을 공고·열람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그 의견 반영 여부 등을 결과서에 기재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주민의 알권리와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케 함	발전사업자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준비에 시간·비용이 소요되며, 발전사업 추진 이전 주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 규제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발전사업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진행 방식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동 조항은 발전사업자의 업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특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전에 공고·열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차후 안정적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	하위법령 반영

		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 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 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 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 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 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 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 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발전사업자의 사전 주민 의견수렴 방식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
 - 기존 농촌태양광 사업의 농촌 경관 훼손, 환경피해 등에 따라, 농촌 주민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낮은 수용성을 고려할 때, 발전사업자가 사전에 발전사업의 내용 등을 알릴 필요성 증대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화된 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 등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

「영농형태양광법」 주민 의견수렴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위임사항
제8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① 발전사	제7조(주민 의견수렴) ① 신청인이 영 제9조제5'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발전사업부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및 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 사업명, 사업위치, 부지면적, 발전용량 및 사업기간 2. 공고기간, 공고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자료의 주요 내용 3.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경우 그 일시·장소, 참석자 수, 설명자료 및 질의·답변 요지 4.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및 대안 검토 결과 5. 인접 농지의 소유자·임차인, 인접 읍·면·동의 주민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추가 질의·협의 내용 6. 주민 의견수렴 결과 변경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또는 피해방지대책 7. 공고문, 게시사진, 참석자 명부, 회의록, 제의·의견 사본, 설명자료 등 주민 의견수렴 사실·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신청인은 설명회 개최 14일 전까지 설명회의 일시·장소·주요 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해당 시·군·구와 읍·면·동의 인터넷 홈페이지, 발전사업부지가 속한 리·통의 게시판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주민설명회에서 발전사업의 위치·규모·기간, 발전설비의 배치·구조·안전관리·영농계획, 농기계 이용계획, 인접 농지 영향 저감대책, 경관·환경·재해·생활환경 영향 및 주민환원계획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신청인에 책임 없는 사유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주민설명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항과 대체 의견수렴 방법을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적어야 한다.
--	---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사업부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공고·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며,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과 같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주민 의견수렴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주민 의견수렴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프랑스·일본 등 의견수렴 절차·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의 경우 '지역계획' 내 농지에 대해서 협의·동의를 전제함

* [프랑스] 영농형태양광 개발 및 농업자연산림지역 태양광 설치조건에 관한 시행령(2024)

* [일본]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한 농지 전용 허가 제도상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2024~)

○ 타법사례

「전기사업법」은 주민 의견수렴·공익상 필요 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고 수단으로 발전소 지역의 일간신문을 활용

< 참고 : 전기사업법 제7조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공고문, 참석자 현황, 제시 의견 및 반영 결과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바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사전공고 기간이 명확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체방법도 인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공고·설명회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자료를 제출받아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의견수렴은 신청인이 수행하고 행정기관은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식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농촌 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 내용 공고·열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발전사업부지 내 마을 주민의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안정적인 발전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주민의견수렴 결과서 및 설명회 절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사업내용 공고·열람,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정리 및 결과서 작성 등에 행적적·시간적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편익)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여 사업 초기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향후 민원·분쟁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종합)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업 중단 및 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규제임

발전사업 공고·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여 향후 집단민원 및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대안 검토 결과 및 주민 의견에 따라 변경된 발전설비계획·영농계획 등을 결과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인·허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공사 지연·중단 및 추가 협의 위험을 낮추어 사업의 장기적·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공고·열람, 설명자료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및 결과서 작성 등에 행정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민 수용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비용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주민의견수렴 결과서 및 설명회 절차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발전사업 사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 추진
비용항목	공고·열람, 주민설명회 개최, 설명자료 작성, 주민의견 정리, 인접 농지 소유자·임차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협의, 결과서 및 증빙자료 작성·보관 등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규칙 제7조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규모·참석인원·설명회 방식 등에 따라 비용 편차가 커 객관적인 표준비용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대안 검토 및 사업 추진
편익항목	주민 수용성 제고, 정보 접근성·알권리 보장, 사회적 갈등 및 집단민원 비용 절감, 인허가 이후 분쟁·공사중단 위험 감소, 안정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 지속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공정한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주민의견 반영 여부를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전사업 허가신청 제출서류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시장·군수·구청장의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통일적, 구체적 허가 기준 설정 － 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자료 범위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기준의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발전사업 허가신청 제출서류 ○ 허가신청 시 사업자 자격, 농업경영, 부지·사용권원, 전기사업 허가, 주민 의견수렴,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안전·보험·원상회복계획 및 주민환원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사항·사유·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목표: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구체화함 ○ 기대효과: 허가 심사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부적격 사업의 진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허가신청을 위해 신청인 자격, 부지, 전기사업, 주민의견, 발전설비 및 영농계획 등 관련 자료를 취합·제출하고 보완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편익)허가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심사의 통일		

		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격 사업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음 -(종합) 제5조,제7조,제9조,제10조 등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는 구조로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데 필요한 규제임 허가신청 시 신청인 자격, 농업경영 사실, 결격사유, 부지·사용권원, 전기사업 허가 및 계통이용 가능성, 주민 의견수렴,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 허가기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허가심사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재원조달·보험·안전관리·인접농지 피해방지·철거 및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허가 단계에서 사업의 재무·안전·환경·사후관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신청인은 여러 분야의 자료를 취합·제출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5조·제7조·제9조·제10조 등 다른 규정에서 작성하는 자료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구조이므로 각 조항에서 이미 분석되는 작성비용을 제8조 비용으로 다시 전부 합산하면 중복계상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8조의 직접비용은 허가신청서 작성, 기존 구비자료의 취합·점검·제출 및 필요한 보완 대응 등 제8조 자체에서 추가되는 행정부담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해당없음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허가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의 농업인에 한정한다) 3.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인서 4.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 자료. 이 경우 신청인이 농지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전기사업 허가 신청·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6.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7. 제9조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및 설계도서 8. 제10조에 따른 영농계획 9. 제12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관련 서류 10. 발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보험가입계획, 안전관리계획, 인접 농지 피해방지계획 및 발전사업 종료 후 발전설비 철거·폐기물 처리계획 11.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른 주민환원계획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료로 허가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사유 및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심사 시 판단할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영농 여부와 설비관리 여부에 대해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발전사업 허가신청 제출서류
	내용	신청인의 사업수행 능력, 부지의 사용권원, 발전설비 안전, 영농계획, 농지보전·환경·원상회복 가능성, 주민수용성 및 주민환원계획 등의 자료 포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허가의 예측가능성과 지역 간 일관성을 높이고 부실사업·난개발을 사전에 차단 가능	신청인이 다수 분야의 계획과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행정부담 발생

○ 규제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관련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세부 기준 설정을 통한 일관된 행정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임
- 해당 서류들을 통해 사업자가 발전사업부지 내에서 농업경영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	하위법령 반영

		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발전사업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구체적인 기준 설정 필요
 - 신청요건으로서 발전사업자의 자격 확인 외 앞으로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시장·군수·

구청장이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은 필수적이며,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허가 기준 및 절차는 발전사업자가 20년 이상 해당 부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최소 규정임

「영농형태양광법」 시행규칙 내 허가기준
제8조(허가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의 농업인에 한정한다) 3.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인서 4.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확인자료. 이 경우 신청인이 농지 임차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전기사업 허가 신청·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전기사업 허가 신청·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6.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7. 제9조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및 설계도서 8. 제10조에 따른 영농계획 9. 제12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관련 서류 10. 발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보험가입계획, 안전관리계획, 인접 농지 피해방지계획 및 발전사업 종료 후 발전설비 철거·폐기물 처리계획 11.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른 주민환원계획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료로 허가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사유 및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발전사업자 허가기준은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발전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의무 부과를 위한 조항의 성격이 아님
- 동 시행규칙의 허가신청 제출서류 목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 유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를 규정함
- 세부적으로 영농활동 지속 가능성, 발전설비 관리 역량 등 발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판단 기준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허가신청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허가신청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허가신청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허가신청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허가신청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허가 조건에 작물 생산 계획(생산성, 수익성 등), 농업인 자격 증명, 원상 복구 가능성 등을 규정

- (일본) 일반적으로 농지 일시전용 허가기간 3년 이내 및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 허용, 재허가 시 영농성과, 농지상태 종합 검토 후 허가

* [일본]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한 농지 전용 허가 제도상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2024~)

- (프랑스) 설치 후 농업소득이 설치 전 평균 소득 이상 유지, 허가기간 종료 시, 최대 10년 연장 가능

* [프랑스] 영농형태양광 개발 및 농업자연산림지역 태양광 설치조건에 관한 시행령(2024)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허가 심사 기준으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전기사업의 계획적 수행, 공급구역 중복 배제(배전사업 등), 공급능력 확보(구역전기사업) 등을 규정, 또한 전기사업법은 허가기준 내 공익상 필요에 대해 전력 계통 및 전력수급 안정 중심으로 규정

< 참고 : 전기사업법 제7조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

-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허가신청서와 첨부자료는 자격, 부지 확보, 설계 및 영농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련되는 자료로 구성됨. 누락 시 보완사유와 기한을 안내 받을 수 있어 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준비·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기존 행정체계로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허가업무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어 별도의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의 허가 신청 제출 서류 등 심사 기준은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 병행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 관련 제출서류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가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최적 기준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발전사업 허가신청 제출서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허가신청을 위해 신청인 자격, 부지, 전기사업, 주민의견, 발전설비 및 영농계획 등 관련 자료를 취합·제출하고 보완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편익)허가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심사의 통일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격 사업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음
- (종합) 제5조,제7조,제9조,제10조 등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는 구조로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데 필요한 규제임

허가신청 시 신청인 자격, 농업경영 사실, 결격사유, 부지·사용권원, 전기사업 허가 및 계통이용 가능성, 주민 의견수렴,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 허가기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허가심사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재원조달·보험·안전관리·인접농지 피해방지·철거 및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허가 단계에서 사업의 재무·안전·환경·사후관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신청인은 여러 분야의 자료를 취합·제출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5조·제7조·제9조·제10조 등 다른 규정에서 작성하는 자료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구조이므로 각 조항에서 이미 분석되는 작성비용을 제8조 비용으로 다시 전부 합산하면 중복계상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8조의 직접비용은 허가

신청서 작성, 기존 구비자료의 취합·점검·제출 및 필요한 보완 대응 등 제8조 자체에서 추가되는 행정부담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발전사업 허가신청 제출서류>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허가신청서 작성 및 구비자료 취합·점검·제출
비용항목	신청인 자격·결격사유 확인, 기존 작성된 부지·주민의견·발전설비·영농 관련 자료의 취합, 전기사업·계통·재원조달·보험·안전·피해방지·철거계획 자료 정리 및 보완요구 대응 등에 따른 추가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점검·제출하는 추가 행정부담이 발생함. 다만 제5조·제7조·제9조·제10조 등에 따른 자료 작성비용은 해당 규제에서 별도로 분석하므로 제8조에서는 중복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취합·제출 및 제8조 고유 추가자료 준비에 따른 증분 비용만 고려하며,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통일된 허가자료에 따른 신속·예측가능한 허가심사 및 적격사업자 선정
편익항목	허가심사의 통일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보완·반려가능성 감소, 영농·설비·재무·안전·계통·사후관리 가능성의 종합적 사전 검증, 부실사업 진입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허가기준 판단에 필요한 자료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신청인의 준비 가능성과 행정청의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장기간 영농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인 운영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전설비계획의 작성사항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1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 · 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발전설비 유지 관련 구체적인 계획 필요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농지에서 20년 이상 발전사업을 영위하는바, 구체적인 발전설비의 관리 등 계획 필요		
	7.규제내용	발전설비계획의 작성사항 ○ 발전설비계획에 설비의 종류 · 용량 · 배치, 차광률, 농기계 통행 공간, 전기 · 구조안전, 재해예방, 배수 · 관수, 유지관리 및 원상회복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관련 자격자가 작성 · 확인한 설계도서와 구조검토 · 전기안전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목표: 설비가 영농 병행 · 안전 · 원상회복에 적합한지를 허가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함 ○ 기대효과: 부적절한 설비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농업생산 저해 및 사후 복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발전설비의 배치 · 구조 · 안전 ·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계도서 및 검토자료 작성 · 확인에 기술적 · 행적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편익) 발전설비의 구조·전기·재해·안전성과 영농 병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안전사고, 부실시공 및 영농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종합) 장기간 안정적인 발전사업 운영과 영농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 검증 절차로, 예방적 편익이 비용보다 큰 규제임 발전설비의 종류·용량·주요 설비의 규격과 성능, 배치도·구조도·전기단선결선도, 구조물 높이·지지대 간 거리·차광률·농기계 통행공간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발전설비가 영농활동과 양립 가능한지를 허가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구조·전기·화재·재해 안전, 배수·관수·토양유실 방지, 농작업자 안전, 공사 중 영농보호, 유지관리 및 사고대응, 종료 후 철거·원상회복 계획까지 포함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영농피해 및 사후복구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전기·구조·건축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확인한 설계도서와 검토자료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설계·검토 및 자료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설계·검사·확인 절차를 거친 자료는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비용을 완화하고 있으며, 사전 검증을 통한 사고·고장·영농피해 예방 편익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해당없음		

	사후 규제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발전설비계획) ① 제8조제1항제7호의 발전설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설비의 종류, 설비용량, 모듈·인버터·변압설비 등 주요 설비의 규격·수량·성능 및 인증 여부 2. 발전설비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기초도, 전기단선결선도 및 계통연계 예정 지점 3. 발전설비의 구조물 최저 높이, 지지대 간 거리, 모듈 배열, 차광률, 시설물 점유면적 및 농기계 통행공간 4. 구조안전, 전기안전, 화재예방, 낙뢰·누전·감전 방지, 태풍·강풍·대설·침수 등 재해예방에 관한 검토 5. 배수·관수시설, 낙수 저감시설, 토양유실 방지시설, 농작업자 안전시설 및 출입통제·안전표지 계획 6. 시공방법, 공사기간, 공사 중 농업생산활동 보호계획, 폐기물·소음·비산먼지·토양오염 방지계획 7.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계획, 점검주기, 점검항목, 사고·고장 발생 시 조치계획 및 관계기관 보고체계 8. 발전사업 종료 또는 허가취소 시 철거·원상회복 방법, 복구비용 산정 및 비용 확보방안 9.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전설비의 영농 병행 가능성, 안전성 및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전설비계획에는 전기·구조·건축 각 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설계도서, 구조검토서 및 전기안전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설계·검사·확인 절차를 거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기준으로서의 발전설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전설비의 성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발전설비계획의 작성사항
	내용	발전설비의 종류, 설비용량, 모듈 등 주요 설비의 규격·수량·성능 및 인증 여부, 설비의 배치도 등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발전설비 사전 검증을 통해 부실 공사 등을 방지하여 영농 피해 최소화 가능	신청인이 발전설비 관련 세부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초기 행정부담 발생

○ 규제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사업자가 적절한 발전설비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할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 발전설비의 종류, 설비용량, 주요 설비의 규격·수량·성능 및 인증 여부 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감(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하위법령 반영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발전설비 유지관리계획, 점검주기 등 관련 안정성에 대한 사전적 준비 조건 설정 필요
 -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설정은 필수적이며,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발전설비계획은 발전사업자가 사전에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관리할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는 필요 최소 규정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발전설비계획에 포함 사항은 사업자가 사전에 안정적인 발전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의무 부과를 위한 조항의 성격이 아님
- 동 시행규칙의 포함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여 20년 이상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규정
- 발전설비 지지대 및 농기계 통행공간 등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 예방적인 자체 계획 수립이 필요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발전설비계획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발전설비계획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발전설비계획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발전설비계획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 등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발전설비계획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허가 조건에 작물 생산 계획(생산성, 수익성 등), 농업인 자격 증명, 원상 복구 가능성 등을 규정
- (일본) 일반적으로 농지 일시전용 허가기간 3년 이내 및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 허용, 재허가 시 영농성과, 농지상태 종합 검토 후 허가
 - * [일본]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한 농지 전용 허가 제도상의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2024~)
- (프랑스) 설치 후 농업소득이 설치 전 평균 소득 이상 유지, 허가기간 종료 시, 최대 10년 연장 가능
 - * [프랑스] 영농형태양광 개발 및 농업자연산림지역 태양광 설치조건에 관한 시행령(2024)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허가 심사 기준으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전기사업의 계획적 수행, 공급구역 중복 배제(배전사업 등), 공급능력 확보(구역전기사업) 등을 규정, 또한 전기사업법은 허가기준 내 공익상 필요에 대해 전력 계통 및 전력수급 안정 중심으로 규정

< 참고 : 전기사업법 제7조 >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발전설비계획은 자격 있는 설계자·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검토자료도 활용할 수 있음. 전문비용은 발생하나 사업 준비에 통상 필요한 범위로서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발전설비계획 및 설계도서를 통해 설비의 구조·안전·영농 병행 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허가심사 과정에서 검토 가능하여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설비 관리 방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 발전사업자가 사전에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적 기준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발전설비계획의 작성사항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발전설비의 배치·구조·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설계도서 및 검토자료 작성·확인에 기술적·행적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편익) 발전설비의 구조·전기·재해·안전성과 영농 병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안전사고, 부실시공 및 영농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종합) 장기간 안정적인 발전사업 운영과 영농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 검증 절차로, 예방적 편익이 비용보다 큰 규제임

발전설비의 종류·용량·주요 설비의 규격과 성능, 배치도·구조도·전기단선 결선도, 구조물 높이·지지대 간 거리·차광률·농기계 통행공간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발전설비가 영농활동과 양립 가능한지를 허가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구조·전기·화재·재해 안전, 배수·관수·토양유실 방지, 농작업자 안전, 공사 중 영농보호, 유지관리 및 사고대응, 종료 후 철거·원상회복 계획까지 포함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영농피해 및 사후복구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전기·구조·건축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확인한 설계도서와 검토자료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설계·검토 및 자료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설계·검사·확인 절차를 거친 자료는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비용을 완화하고 있으며, 사전 검증을 통한 사고·고장·영농피해 예방 편익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발전설비계획의 작성사항>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발전설비계획 및 설계·안전 검토자료 작성·확인
비용항목	설비 규격·성능 및 배치계획 작성, 구조·전기·재해 안전 검토, 농기계 통행·배수·관수·토양유실·농작업자 안전계획 수립, 설계도서·구조검토서 등 전문자료 작성·확인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발전설비계획과 관련 설계·검토자료를 작성·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 활용 및 자료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사업규모·설비형식·기존 설계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비용 편차가 크고, 관계 법령상 기존 자료로 같음 가능한 경우도 있어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영농 병행 가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발전설비의 설치·운영
편익항목	부실설계·시공 예방, 구조·전기·화재·재해 사고 위험 감소, 농기계 통행 및 농작업 안전 확보, 영농피해·토양유실·배수장애 예방, 유지관리 효율화 및 원상회복 가능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설치 전 설비의 구조·안전·영농병행 가능성과 유지관리·원상회복 계획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운영기간 중 사고·고장·영농피해 및 사후복구 관련 비용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발전사업 운영 편익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농계획의 작성사항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동 조항은 발전사업자가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시에 작성 필요한 사항을 규정		
	7.규제내용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신청서에 작성 필요한 사항 ○ 영농계획에 재배작물, 재배면적, 작부체계, 농작업 일정, 인력·장비 확보, 농업생산활동 증빙방법, 재해 발생 시 영농 재개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은 영농책임자 및 영농실적 관리체계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9.규제목표	○ 목표: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실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함 ○ 기대효과: 형식적인 영농계획 제출을 방지하고 발전사업 전 기간에 걸친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작물·재배면적·농작업 일정, 인력·농기계·농자재 확보 및 영농실적 관리계획 등을 작성하는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편익)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확보하고 형식적 영농을 방지하며 영농의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 -(종합)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인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기존 제출자료 활용을 통해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 보전과 안정적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함 발전사업부지의 영농여건, 재배작물·품종·면적·작부체계, 농작업 일정, 생산물 처분계획, 노동력·농기계·농자재·영농비용 조달계획 등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여 발전설비 설치 이후에도 실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음. 일조·통풍·배수, 농기계 통행 및 농작업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영농방법과 영농일지·사진·농자재 구입·농산물 판매자료 등 실적관리 방법을 계획하도록 하여 향후 영농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반을 마련함. 자연재해·병해충·설비 고장·농지개량·일시 휴경 등에 대한 영농 지속 또는 재개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지보전 목적을 유지할 수 있음. 필지별 영농계획 작성에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5조·제9조·제12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이미 제출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 중복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영농계획) 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농계획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사업부지의 지번별 면적, 이용 현황, 토양·용수·배수 여건 및 영농 여건 2. 재배하려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품종, 재배면적, 작부체계(作付體系), 재배기간 및 재배방법 3. 생산물의 수확·판매·자가소비 등 처분계획 4. 발전사업부지의 지번별 경작·재배 면적 및 그 산정 근거 5. 발전설비 설치 전후의 일조·통풍·배수, 농기계 통행·작업 및 농작업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고려한 영농방법 6. 발전사업자의 농업생산활동 이행체계와 이에 필요한 참여인력(영농책임자를 포함한다), 노동력 확보방안, 농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 및 이용계획, 주요 농자재와 영농비용의 조달계획 7. 파종·정식, 시비·방제, 관수·배수, 제초, 수확·출하 등 주요 농작업 일정 8. 영농일지, 사진·영상자료, 농자재 구입자료, 농산물 출하·판매자료 등 농업생산활동 자료의 작성·보관·제출 방법 및 영농실적 확인 방법 9. 자연재해, 병해충, 발전설비의 고장·수리·교체, 농지개량 또는 일시적 휴경 등으로 농업생산활동이 곤란한 경우의 영농 지속 또는 재개 계획 10.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기간, 갱신 가능성,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협조사항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농지 복구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발전사업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필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및 주요 농작업 일정, 작부체계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사항 중 제5조,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서류

현 행	개 정 안
	또는 자료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서류 또는 자료의 사본, 제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의 열람·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농계획에 영제19조제2항에 따른 영농책임자의 성명, 자격·경력, 업무범위, 부재 시 대체관리체계 및 영농실적 관리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8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의 세부 기준 및 필요한 사항에 관한 위임 규정으로서 지속적인 영농 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에 관한 필수 포함 사항 규정 필요
 -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업생산활동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배 농작물 종류 및 재배면적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영농계획의 작성사항
	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영농계획 내 재배 농작물 종류, 재배기간 및 재배방법 등 필요 항목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발전사업자가 농업생산활동 유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함	발전설비 설치 전후에 따라 농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노력이 소요됨

○ 규제대안의 비교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영농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행정·기술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장기간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서에 필요한 영농 계획 서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재배 농작물 종류·품종·재배면적, 생산물의 수확·판매·자가소비 계획 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하위법령 반영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발전사업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서 내 영농계획 및 영농실적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규정 필요
- 사업자의 지속적인 영농활동 추진을 위해 영농 관리 체계에 관한 계획 등 자료 목록 마련은 필수적이며,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자료 목록(영농일지, 주요 농작업 일정 등)은 발전사업자의 영농 지속 가능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지속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생산물의 수확·판매 계획, 노동력 확보방안, 농기계 보유현황 등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영농계획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영농계획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영농계획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영농계획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영농계획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매년 농업위원회에 영농활동 보고서 제출, 지역 평균 대비 수확량 20% 이상 감소 금지
- (프랑스) 비교 부지 평균 수확량의 90% 이상 유지 필요 및 결과 보고서, 농업생산량·발전량 통계 제출 의무
- (독일) 농업생산량이 기준생산량의 66% 이상 유지 필요, 농경지 감소율 15% 미만일 경우에만 직불금 유지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재배작물, 면적, 인력·장비 및 영농일정은 신청인이 실제 영농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할 수 있음. 공통사항의 일괄 작성과 기존 자료의 대체가 가능하므로 과도한 중복 없이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영농계획과 관련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허가심사 및 농업행정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목록은 지속적인 영농활동으로 농지 보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 농업 생산량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으로 적정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농계획의 작성사항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비용) 작물·재배면적·농작업 일정, 인력·농기계·농자재 확보 및 영농실적 관리계획 등을 작성하는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편익)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확보하고 형식적 영농을 방지하며 영농의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
 -(종합)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인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기존 제출자료 활용을 통해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 보전과 안정적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함

발전사업부지의 영농여건, 재배작물·품종·면적·작부체계, 농작업 일정, 생산물 처분계획, 노동력·농기계·농자재·영농비용 조달계획 등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여 발전설비 설치 이후에도 실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음. 일조·통풍·배수, 농기계 통행 및 농작업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영농방법과 영농일지·사진·농자재 구입·농산물 판매자료 등 실적관리 방법을 계획하도록 하여 향후 영농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반을 마련함. 자연재해·병해충·설비 고장·농지개량·일시휴경 등에 대한 영농 지속 또는 재개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지 보전 목적을 유지할 수 있음. 필지별 영농계획 작성에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5조·제9조·제12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이미 제출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그 자료로 갈음

할 수 있어 중복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농계획의 작성사항>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영농계획 및 영농실적 관리체계 작성
비용항목	필지별 영농여건 확인, 작물·재배면적·작부체계 및 농작업 일정 수립, 노동력·농기계·농자재·영농비 조달계획 작성, 영농실적 증빙·보관 방법 및 재해·고장 시 영농재개계획 마련 등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규칙 제10조의 영농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영농여건과 농작업·인력·장비·비용·실적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리하는 부담이 발생함. 다만 제3항에 따라 제5조·제9조·제12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이미 제출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같음할 수 있으므로 중복 작성비용을 제외한 증분부담을 고려하며,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및 영농실적 관리
편익항목	형식적 영농 방지,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성·예측가능성 제고, 농기계·노동력·농자재 운용 효율화, 영농의무 이행 확인의 객관성 확보, 재해·고장 시 영농공백 최소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구체적인 영농계획과 실적관리체계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발전설비 설치 후에도 농업생산활동이 계획적으로 지속되고, 허가권자의 영농이행 확인도 용이해져 농지 보전과 안정적인 발전사업 병행이라는 제도 편익이 사업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변경허가·변경신고 제출자료 및 절차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동 조항은 발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		
	7.규제내용	○ 사업 허가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변경허가 신청 시 기존 허가증, 변경사유와 전·후 대비표, 변경된 발전설비·영농·주민환원·원상회복계획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경미한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기존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규제목표	○ 목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변경 후에도 기존 허가기준이 유지되도록 함 ○ 기대효과: 무단 사업변경을 예방하는 한편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위해 변경 사유서, 변경 전·후 대비표 및 변경사항을 방연한 발전설비·영농계획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발생 할 수 있음 －(편익)변경사항의 적정성과 영농 지속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변경 이후 사업중단·분쟁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발전사업을 지속 할 수 있음		

		-(종합) 변경되는 사항에 한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허가사항 변경 이후에도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적 규제임 발전사업자가 기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 전·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변경사항이 반영된 발전설비계획·영농계획·주민환원계획 또는 원상회복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변경 이후에도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음. 발전사업부지의 위치·경계, 사용권원, 발전설비 및 영농계획 등 주요 허가사항의 변경내용을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당초 허가기준을 우회하거나 변경으로 인해 영농활동·안전성·주민수용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발전사업자는 기존 허가증,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전·후 대비표, 변경사항이 반영된 각종 계획과 도면·산정자료·계약서·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일정한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변경되지 않은 사항까지 새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부담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해당없음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허가증 2.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전·후 대비표 3.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또는 원상회복계획 4. 변경사항을 표시한 도면, 산정자료, 계약서, 동의서(임차농지의 경우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및 관계 법령상 인허가·신고·협의 관련 자료 5. 발전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이고 변경사항이 발전사업부지의 위치·경계 또는 사용권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6. 변경으로 인하여 영 제9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허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연장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기존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11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세부 기준에 관한 위임 규정
 - 영농 의무를 유지하며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필수 포함 사항 규정 필요
 - 특히, 발전사업자가 변동 사항을 반영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등을 제출하여 이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변경허가변경신고 제출자료 및 절차
	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등 제출 필요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발전사업자가 농업생산활동 유지하며 발전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	발전설비 변경 전후에 따라 영농계획 변화 등 자료 준비에 노력이 소요됨

o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의 집행 규정을 통해 발전사업자는 변경 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함
- 허가권자의 통일된 변경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해 변경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

*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작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발전사업자가 일정 사유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변경 신청이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변경 신청서 내 필요 서류 목록 규정 등 일관된 기준 필요
- 사업자의 지속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 사항을 반영한 발전설비계획 등 자료 목록 규정은 필수적이며,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자료 목록은 발전사업자의 영농 지속 가능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

「영농형태양광법」 발전사업 허가	「영농형태양광법」 시행규칙 위임사항
제11조(발전사업 허가의 변경) ① 발전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발전사업 허가의 변경 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허가증 2.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전·후 대비표 3.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또는 원상회복계획 4. 변경사항을 표시한 도면, 산정자료, 계약서, 동의서(임차농지의 경우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및 관계 법령상 인허가·신고·협의 관련 자료 5. 발전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이고 변경사항이 발전사업부지의 위치·경계 또는 사용권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6. 변경으로 인하여 영 제9조에 따른 주민의 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허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연장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기존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	--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활동과 발전 사업을 지속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또는 원상회복계획 및 변경 도면, 계약서, 관련 인허가 관련 자료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신고, 허가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분산에너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는 사업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 : 분산에너지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①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전기신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풍력 발전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2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 및 제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자금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③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변경 전후 대비표와 수정 계획서는 기존 허가자료를 기초로 변경된 부분만 정리할 수 있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변경내용에 비례한 자료 준비로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변경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존 허가내용과 비교·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허가·신고 처리체계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큰 재정 소요 없이 집행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 허가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목록은 지속적인 영농활동으로 농지 보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 변경 허가를 통해 지속적인 농업 생산량 확보로 식량안보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적정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변경허가·변경신고 제출자료 및 절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위해 변경 사유서, 변경 전·후 대비표 및 변경사항을 방연한 발전설비·영농계획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발생 할 수 있음
- (편익)변경사항의 적정성과 영농 지속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변경 이후 사업중단·분쟁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발전사업을 지속 할 수 있음
- (종합) 변경되는 사항에 한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허가사항 변경 이후에도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적 규제임

발전사업자가 기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 전·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변경사항이 반영된 발전설비계획·영농계획·주민환원계획 또는 원상회복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변경 이후에도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음. 발전사업부지의 위치·경계, 사용권원, 발전설비 및 영농계획 등 주요 허가사항의 변경내용을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당초 허가기준을 우회하거나 변경으로 인해 영농활동·안전성·주민수용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발전사업자는 기존 허가증,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전·후 대비표, 변경사항이 반영된 각종 계획과 도면·산정자료·계약서·등

의서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일정한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변경되지 않은 사항까지 새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경
되는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내
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부담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변경허가·변경신고 제출자료 및 절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비용항목	변경 사유서 및 변경 전·후 대비표 작성, 변경사항이 반영된 발전설비계획·영농계획·주민환원계획 또는 원상회복계획의 수정·작성, 관련 도면·산정자료·계약서·동의서 및 인허가 관련 자료 준비 등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작 성·제출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시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 음. 다만, 변경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 이므로 기존 허가 시 이미 작성·제출한 자료 전체를 다시 작성하는 비용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변경내용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편차가 커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 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변경된 사업내용에 따른 안정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 지속
편익항목	변경허가·변경신고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변경사항에 대 한 적법성 및 영농 지속 가능성의 사전 확인, 변경 이후 사업 중단·분쟁 및 재보완 위험 감소,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발전 사업 지속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발전사업의 변경사항과 제출자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 업자는 변경허가·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변경 이후에도 허가기준 및 영농 지속 가 능성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지속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전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제출서류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동 조항은 발전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등의 지위승계 상황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공백을 방지할 필요		
	7.규제내용	사업자 지위승계 기준 ○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상속·합병·분할 증빙, 승계인의 자격요건, 사용권원, 종전 허가조건·영농계획·주민환원계획 승계 협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규제목표	○ 목표: 승계인이 기존 사업자의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함 ○ 기대효과: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영농·안전·주민환원 의무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발전사업 지위승계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등 행정 부담 발생 가능 －(편익) 사업자의 지위변동 사유에 따른 지위승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종합) 적법한 사업 승계와 발전사업 지속 추진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		

		발전사업 수행 중 양도·양수, 상속 등 지위변동 사유 발생 시 명확한 승계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 가능함 사업부지 내에서 실제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제한·검증함으로써, 무자격자의 투기성 진입이나 관리 소홀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전설비 난개발 및 농지 유실을 방지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게 함 지위승계 신청 시 자격 요건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등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의 적법한 승계와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임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업자 지위승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양도·상속·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인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3. 승계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4. 승계인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인서 5. 발전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임차권·사용대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하거나 임차농지에서 발전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6. 종전 허가증 7. 종전 발전사업자의 허가조건, 영농계획, 발전설비 유지관리계획 및 주민환원계획을 승계하여 이행한다는 협약서 8.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대한 인가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결과 제출계획서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1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해 발전사업부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관한 위임 규정
 - 승계인이 지위승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의무와 발전사업 병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승계 기준 등에 관해 명확한 사항 규정 필요
 - 특히, 발전사업자가 지위승계 신고서 내에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발전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원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인 사업 이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발전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제출서류
	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격요건 증명, 발전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원 증명 서류 첨부 필요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발전사업자가 지위승계를 통해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 병행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함	승계인의 자격요건 증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외부 사업자의 참여는 제한될 수 있음

o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자격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발전사업자는 지위승계에 따른 적법하고 지속적인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 가능함
- 사업부지에서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작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일정 사유에 따른 발전사업자 지위승계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 간의 승계 오류를 줄이고, 발전사업 및 행정처리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지위승계 기준을 통해 사업자의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 병행 중심의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

「영농형태양광법」 발전사업 지위승계	「영농형태양광법」 시행규칙 위임사항
제12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사후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부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1. 발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발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발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발전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조에서 “승계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설립일부터 종전의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을 대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승계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주기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자 지위승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양도·상속·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승계인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3. 승계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4. 승계인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인서 5. 발전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임차권·사용대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권원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하거나 임차농지에서 발전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6. 종전 허가증 7. 종전 발전사업자의 허가조건, 영농계획, 발전설비 유지관리계획 및 주민환원계획을 승계하여 이행한다는 약속서 8.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대한 인가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결과 제출계획서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위승계 기준은 농업생산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하는 안정적인 사업환경 마련을 위해 필수적이며,
 - 승계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 및 사업부지 권원, 사업 이행 가능성 등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사업자 지위승계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사업전환/승계/폐업
② 규제 방식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사업자 지위승계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사업자 지위승계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전기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의 지위승계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음

< 참고 : 전기사업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 >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변경 전후의 사업계획과 관련 증빙은 사업자가 보유하는 자료로 작성할 수 있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으로 처리됨. 변경내용에 맞춰 정해진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승계 신고서와 자격·사용권원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신고를 처리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신고 및 행정정보 확인체계를 활용하므로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지위승계 기준은 사업 수행 중 양도·양수, 상속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가도록 규정하는 기준으로,
- 명확한 규정 마련을 통해 사업 공백을 줄이고, 농촌 태양광의 외부 투기자본 유입 등을 방지하며 농지보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정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발전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제출서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발전사업 지위승계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등 행정 부담 발생 가능
- (편익) 사업자의 지위변동 사유에 따른 지위승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 (종합) 적법한 사업 승계와 발전사업 지속 추진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

발전사업 수행 중 양도·양수, 상속 등 지위변동 사유 발생 시 명확한 승계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 가능함

사업부지 내에서 실제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제한·검증함으로써, 무자격자의 투기성 진입이나 관리 소홀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전설비 난개발 및 농지 유실을 방지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게 함

지위승계 신청 시 자격 요건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등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의 적법한 승계와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발전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제출서류>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사업자 지위 승계 요건 확인 및 관련 절차 이행
비용항목	사업자 자격 확인, 발전사업부지 권원 확보·증빙, 종전 사업자의 계획승계·이행준비, 「전기사업법」상 절차의 신청·신고·완료·확인 등에 따른 행정적·시간적 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시행규칙 제15조의 지위승계 신고 필요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증빙 및 관계 절차 이행에 수반되는 금전적 부담이며, 정량 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명확한 기준에 따른 사업 지위승계 및 사업 추진
편익항목	승계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사업·행정 공백 감소, 안정적인 영농 및 발전사업 지속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지위승계에 필요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편익이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승계인 사후관리 정기점검 주기 및 범위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동 조항은 발전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등의 지위승계 상황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공백을 방지할 필요		
	7.규제내용	승계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관련 사항 ○ 지위승계가 확정된 후 3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승계인의 영농계획 이행,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사용권원 유지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함 ○ 원칙적으로 서류·자료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규제목표	○ 목표: 지위승계 이후에도 영농 및 발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일정기간 집중 확인함 ○ 기대효과: 형식적 지위승계 또는 승계를 통한 의무 회피를 예방할 수 있음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규제의 적정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비용) 승계인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 및 현장 점검 등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인받은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 발생 예상		

	(정성분석)	-(편익) 영농 미이행,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확보하고, 서류·자료 확인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확보 -(종합) 승계 이후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임 승계인은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자료 준비, 제출 등 과정에서 일부 행정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성·보관해야 할 필요 최소한의 자료로 자료의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또한, 승계 이후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 충족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제도의 본래 취지인 발전 사업과 태양광 발전 병행에 부합함 따라서 본 규제는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행사항인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 간 균형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해당없음		

	사후 규제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승계인 사후관리) ①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계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승계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서류 또는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서류 또는 자료만으로는 제3항 각 호의 점검사항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른 영농계획의 승계 및 이행 여부 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의 충족 여부 3. 영 제20조에 따른 특별한 사유 인정 또는 영 농 재개계획 이행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전사업부지 사용권원 유지 여부. 이 경우 승계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요건의 유지 여부를 포함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영농형태양광법 제1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영농계획을 지속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위한 세부 기준 위임 규정
 - 승계인이 영농 의무를 충족하며 발전사업 병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점검 사항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 특히, 승계인의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 충족 여부 및 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권원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인 사업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승계인 사후관리 정기점검 주기 및 범위
	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위승계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방법 및 절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승계인이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의 병행을 지속 추진할 수 있게 함	승계인이 주기적으로 준수사항 이해 여부를 증명해야 하므로 행정적 절차 소요

o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행에 대해 주기적 점검 방법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점검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의 구체적 점검 방법 등 기준 마련을 통해 발전사업자는 지속적인 영농의무 이행과 동시에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 가능함
- 승계인이 사업부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통한 농지 보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점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작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 목표

- 발전사업 지위승계에 따라, 영농 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 기준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영농 의무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승계인이 발전사업·농지 관련 정합성을 지속 확보하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 운영이 차질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

「영농형태양광법」 발전사업 지위승계	「영농형태양광법」 시행규칙 위임사항
제12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사후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부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1. 발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발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발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발전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조에서 “승계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인 또는 설립일부터 종전의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을 대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승계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주기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계인 사후관리) ①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계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승계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서류 또는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서류 또는 자료만으로는 제3항 각 호의 점검사항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른 영농계획의 승계 및 이행 여부 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 기준의 충족 여부 3. 영 제20조에 따른 특별한 사유 인정 또는 영농 재개계획 이행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전사업부지 사용권원 유지 여부. 이 경우 승계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요건의 유지 여부를 포함한다.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위승계인이 농업생산활동 유지 등 사업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관리하고 점검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 세부 규정이 필요하며,
 - 승계인의 영농계획 이행 여부, 발전사업부지 권원 등 사업 이행 가능성 등 관련 절차를 점검·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승계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승계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승계인 사후관리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승계인 사후관리는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 등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승계인 사후관리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분산에너지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사업 승계자의 결격 사유 준용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음

< 참고 : 분산에너지법 제9조 및 제11조 >

제9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승계 후 3년간의 확인은 기존 영농계획, 영농실적 및 설비관리 자료를 활용한 서류확인을 원칙으로 함. 현장확인 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승계인이 통상적인 기록관리를 하면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승계 후 3년간 제출자료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사후관리·점검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위 승계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을 병행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기준으로,
- 이행 점검 절차 및 방법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한 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정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위승계자 점검사항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비용) 승계인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 및 현장 점검 등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인받은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 발생 예상
 -(편익) 영농 미이행,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확보하고, 서류·자료 확인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확보
 -(종합) 승계 이후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임

승계인은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자료 준비, 제출 등 과정에서 일부 행정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성·보관해야 할 필요 최소한의 자료로 자료의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또한, 승계 이후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 충족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제도의 본래 취지인 발전사업과 태양광 발전 병행에 부합함

따라서 본 규제는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행사항인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 간 균형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위승계자 점검사항>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자
활동제목	승계인 사후관리에 따른 관련 자료 작성·관리 비용
비용항목	행정부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승계인이 승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에 대비하여 농업생산활동 기준의 충족 여부, 발전사업부지 사용권원 유지여부 등 관련 자료 작성 과정에서 일시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자
활동제목	승계인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편익항목	승계인 사후관리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행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사후관리 절차 및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본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및 사업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 인정 관련 제출서류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생산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규정 －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생산활동 지속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생산활동을 일시중단할 경우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농업생산활동을 일시중단할 경우 증명자료 등 필요 서류 ○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 사유를 인정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중단 사유·기간·대상필지·재개계획·안전 및 농지훼손 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단의 불가피성과 영농 재개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규제목표	○ 목표: 일시중단 제도가 단순한 영농의무 회피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마련함 ○ 기대효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보호하면서 장기간 방치 또는 형식적 영농을 방지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 (비용)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자료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이 발생		

	(정성분석)	－ (편익) 특별한 사유로 농업생산활동을 일시 중단 할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 (종합) 정당한 사유가 있는 농업인이 일시적인 생산활동 중단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행정의 일관성·예측가능성 확보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함 본 규제는 불가피한 농업생산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화하고, 해당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제출자료는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적 중단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음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 사업자별 편차를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생산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일시중단 사유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에 관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증명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의 내용 및 발생일 2. 농업생산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기간 3. 영향을 받는 필지, 면적 및 작물 4. 영농 재개계획, 대체 작물 재배계획 또는 피해 복구계획 5.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및 농지 훼손 방지대책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의 존재, 농업생산활동 중단의 불가피성, 영농 재개 가능성 및 농지 보전상태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기간, 대상 면적, 이행해야 할 조치 및 영농 재개기한을 정하여 발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규정하여, 농업생산활동 중단에 불가피성 및 영농재개 가능성, 농지보전상태 등 일시중단 인정 여부와 농업생산활동 재개여부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음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중단할 경우 인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 제출서류 등 기준 설정이 필수적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 인정 관련 제출서류
	내용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인정받기 위한 발생일 및 내용, 농업생산활동 중단 또는 축소 기간, 영향받은 필지 및 작물, 영농재개 계획, 대체 작물 재배 계획 또는 피해복구 계획, 발전설비 안전 관리 및 농지 훼손 방지대책 등 제출서류 및 증명 자료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을 위한 사업자 간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행정의 일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농업생산활동을 일시중단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객관적 증빙을 통해 불이익 방지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함	발전사업자가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는데 시간·비용이 소요됨

o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생산 활동의 일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 인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증명자료, 제출서류 등 행정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농업생산활동 지속을 전제로 하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당한 사유로 인한 농업생산활동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 목표

- 농업생산활동 지속을 전제로 하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생산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인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설정
 -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자료, 제출 서류 등 근거 서류 목록 마련 및 명확화는 필수적이며,
 - 규제 대안에서 제시한 증명자료 및 제출서류(사유 내용 및 발생일, 기간, 영향 받은 필지, 면적 및 작물, 재개계획, 농지 훼손방지대책 등)는 영농활동 가능성 및 재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최소 기준

「영농형태양광법」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위임사항	「영농형태양광법」 시행규칙 위임사항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	제20조(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발전사업자가 정상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풍·홍수·호우·강풍·가뭄·대설·냉해·병해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또는 농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확산, 출입통제 또는 공익사업 시행 등 발전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질병·상해, 임신·출산, 병역의무 이행, 취학, 공직취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일시중단 사유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에 관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증명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의 내용 및 발생일 2. 농업생산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기간 3. 영향을 받는 필지, 면적 및 작물 4. 영농 재개계획, 대체 작물 재배계획 또는 피해복구계획 5.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및 농지 훼손 방지대책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의 존재, 농업생산활동 중단의 불가피

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로서 제19조제2항에 따른 영농책임자에게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대체 영농책임자를 지정할 수 없거나 필요한 영농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5. 발전설비의 안전점검·수리·교체, 농업기반시설의 보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농지개량, 영농준비, 작부체계상 휴경, 토양개량, 객토, 배수개선, 농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절 또는 연작피해 예방을 위하여 일시적 휴경이 불가피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농 지속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 발전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 중단 기간, 영농재개계획 및 증명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의 인정절차와 증명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의 인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공익사업, 질병 등 사유가 계속되어 농업생산활동 재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성, 영농 재개 가능성 및 농지 보전상태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기간, 대상 면적, 이행해야 할 조치 및 영농재개기한을 정하여 발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재해, 농작물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중단이 발생한 경우 객관적인 증명·제출 자료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 여부 인정을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농업생산활동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규정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일시중단 사유 등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일시중단 사유 등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일시중단 사유 등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일시중단 사유 등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 등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일시중단 사유 등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농림수산성은 영농형 태양광의 재허가 과정에서 종전의 영농상황을 확인하고, 자연재해나 영농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농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서류 제출 요구

○ 타법사례

- 「집단에너지법」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며, 관련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중단사유 증빙, 영농 재개일정 및 설비 유지관리계획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사실자료와 향후 계획으로 작성할 수 있음. 요구항목과 처리절차가 명확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 처한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사업자가 제출한 일시중단 사유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정 여부 및 재개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사후관리 업무로 처리할 수 있어 별도의 큰 재정 소요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생산활동 일시 중단 인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불가피한 영농활동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행정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 영농 재개계획, 피해복구계획 등 검토를 통해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최적 기준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 인정 관련 제출서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자료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이 발생
- (편익) 특별한 사유로 농업생산활동을 일시 중단 할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 (종합) 정당한 사유가 있는 농업인이 일시적인 생산활동 중단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행정의 일관성·예측가능성 확보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함

본 규제는 불가피한 농업생산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화하고, 해당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제출자료는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적 중단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음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 사업자별 편차를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생산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 인정 관련 제출서류>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일시중단 관련 증명자료 작성·보관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불가피하게 농업생산활동을 일시중단 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의 기준과 제출서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당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향후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에 따른 불이익 등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운명을 위함임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 사유 입증
편익항목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업 운영의 안정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생산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일시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또한 일시중단 사유 및 인정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영농형태 양광 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사항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발전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 － 발전설비로 이상으로 인한 농업생산활동 저해 또는 농지 훼손, 안전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확보 등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유지·관리 ○ 발전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및 재해·사고 후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설비 이상 여부, 농기계 통행공간·배수시설·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규제목표	○ 목표: 발전설비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통해 농작업자와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함 ○ 기대효과: 설비 고장·화재·감전·붕괴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안전관리체계 확보, 점검 등 발전설비 유지·관리 관련 사업자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이 안정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발전설비의 유지·관리)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안전관리체계의 확보 2. 연 1회 이상의 자체점검 및 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화재 등 재해 또는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수시점검 3. 모듈·지지구조물·기초·배선·접지·접속함·인버터·변압설비·보호장치·감시장치의 이상 여부 확인 4. 농기계 통행공간, 배수·관수시설, 낙수 저감시설, 안전울타리, 안전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유지관리 5. 발전설비의 고장·파손·화재·누전·감전·붕괴·낙하 또는 농업생산활동에 지장이 생긴 경우 응급조치, 관계기관 신고 및 재발방지 조치 ② 발전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안전점검 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조치 결과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발전설비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활동 저해 및 화재, 감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의하고 있음
 - 연 1회 이상의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 안전사고 발생 또는 농업생산활동 지장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안전사고와 농지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와 사업자의 이행사항 기준 설정은 필수적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사항
	내용	발전설비에 관하여 안전관리체계 확보, 연1회 이상의 자체점검, 이상 여부 확인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이행 사항 관련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발전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농업인 안전을 확보하고, 설비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농업생산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발전사업자가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는데 시간·비용이 소요됨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발전설비의 고장, 이상 또는 안전사고, 농업생산활동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발전설비의 부적정한 관리는 농업인의 안전 및 농업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적절한 유지·관리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농업생산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안정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제도 도입의 목적
- 사업자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는 발전설비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 농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 대안에서 제시한 유지·관리 이행사항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전성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영농형태양광법」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영농형태양광법」 시행규칙 위임사항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발전설비의 유지·관리)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안전관리체계의 확보 2. 연 1회 이상의 자체점검 및 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화재 등 재해 또는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수시점검 3. 모듈·지지구조물·기초·배선·접지·접속함·인버터·변압설비·보호장치·감시장치의 이상 여부 확인 4. 농기계 통행공간, 배수·관수시설, 낙수 저감시설, 안전울타리, 안전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유지관리 5. 발전설비의 고장·파손·화재·누전·감전·붕괴·낙하 또는 농업생산활동에 지장이 생긴 경우 응급조치, 관계기관 신고 및 재발방지 조치 ② 발전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안전점검 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조치 결과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에서 발전사업과 농업생산활동을 병행하는 사업인 만큼,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적절한 관리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농업생산활동의 지속 및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 발전설비 유지·관리 기준은 발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기준이며 이와 더불어 1년 주기의 정기 점검을 규정하여 해당 기준의 실효성 확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발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발전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발전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산업소방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발전설비의 유지·관리는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발전설비의 유지·관리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연 1회 자체점검과 재해 후 점검은 안전관리자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할 수 있고, 다른 법령상 검사결과로 중복 점검을 갈음할 수 있음. 점검결과를 5년간 보관하면 되므로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점검·조치 결과자료와 관계 법령상 검사자료 등을 통해 유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사업자의 자체점검 및 기존 안전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발전설비를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 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기본적인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과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병행을 도모함
 - 따라서 발전설비 방치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규제는 필수적인 사항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사항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본 규제에 따라 발전설비의 수시점검 및 조치와 재발방지 조치 과정에서 점검 및 보수, 안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편익) 발전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설비의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발전설비로 인한 농지훼손 등 농업생산활동 저해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함
- (종합) 사업자가 부담하는 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비용은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편익이 더 크므로 본 규제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판단

본 규제는 발전사업에 필요한 점검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재발조치 방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점검 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자체점검 및 시설점검 등 관련 사항은 발전설비 및 사업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라 판단됨.

본 규제를 통해서 안전사고 및 농지 훼손 등 농업생산활동 저해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보호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사항>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관련 자료 작성·보관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안전관리체계 확보 및 연 1회이상의 자체점검, 발전설비 관리 등 점검·보수 과정에서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 운영과정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관리행위로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한적이라 판단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관련 자료 작성·보관
편익항목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자료 작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 기반 마련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발전설비의 정기적인 자체점검 및 주요 설비의 이상 여부 확인 등 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 고장 및 파손을 사전에 발견하고,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화재, 누전, 감전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재발방지를 통해 사업중단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훼손 및 농업생산활동 저해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준수사항 이행자료의 작성·보관·제출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가 최소한의 자료 관리 작성 기준 및 보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범위·보관기간·제출절차를 구체화하여 확인기준의 통일성·사업의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 발전사업자의 농업생산활동, 유지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자료의 작성 및 제출, 보관 ○ 지속적인 영농활동, 일시중단 및 영농재개, 인접 농지 피해·민원·안전사고 등에 관한 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자료로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함 ○ 사진·영상은 촬영일시와 위치정보가 확인되는 전자자료로 보관하고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출을 허용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규제목표	○ 목표: 발전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실제 이행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관리 기준을 마련함 ○ 기대효과: 사후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영농실적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농업생산활동 및 유지관리 등 관련 준수사항 이행자료 작성 과정에서 일정의 행정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편익) 사업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하는 자료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관련 이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함 -(분석) 관련 자료 작성 및 보관 과정에서 일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과정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객관적인 증명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발전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점검 및 주요설비의 이상여부 확인을 통해 설비의 고장·파손 등을 사전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특히, 누전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며, 농지훼손 및 농업생산활동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은 일반적인 태양광 사업과 달리 동일한 공간에서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이 병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전설비의 적절한 유지·관리는 본 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부합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재검토행	44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70101~20291231	3
	13. 우선허 용· 사후 규제	해당없음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준수사항 이행자료) ①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인정, 영농 재개, 대체 작물 재배 또는 피해복구에 관한 자료 3. 인접 농지 피해, 민원, 안전사고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발전사업자는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자료를 종이문서, 전자문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자료를 전자문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작성 일시, 작성자, 대상 필지의 지번, 허가번호 및 수정·삭제 등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진·영상자료를 촬영 일시 정보 및 위치정보가 보존·확인될 수 있는 전자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진·영상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때에도 그 원본파일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⑤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서식, 자료 입력항목 및 자료연계 방식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자료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발전사업 운영과 더불어 농업생산활동의 이행 여부, 일시중단 사유 및 재개 계획, 피해 민원 등 안정적인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작성·제출·보관 해야하는 종류를 정의하고 있음
 - 특히, 일시적인 현장점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일시중단에 따른 농업재개 계획, 피해 민원 등)을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임
 - 영농형태양광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준수사항 이행자료의 작성·보관·제출
	내용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 관련 필요한 자료, 특별한 사유 인정 및 영농 재개 등 관련 자료, 인접 농지 피해 민원 및 인접 농지 민원·안전사고 관한 자료 등 필요자료를 규정하고, 해당 자료를 작성·보관·제출 하도록 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자료의 종류와 보관사항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 일정기관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발전사업자가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는데 시간·비용이 소요됨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장점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농업생산활동의 지속여부, 일시 중단사유 및 재개계획 등 관련 자료를 작성·보관·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지속적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본 대안 필요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발전사업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의무이며, 제도의 사후관리 및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영농형태양광 추진 과정에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보관·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농형 태양

광 발전사업이 안정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제도 도입의 목적

- 자료의 종류와 보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준비·관리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축적된 자료를 종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관리·활용하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 관리 지원

「영농형태양광법」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위임사항	「영농형태양광법」 시행규칙 위임사항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 ① 발전사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1. 연도별 영농계획, 작부체계, 파종·정식·재배관리·수확 시기 및 경작·재배면적에 관한 자료 2. 농자재 투입, 농작업 수행, 농기계 사용 및 인력투입 등에 관한 자료 3. 제1호에 따른 파종·정식·재배관리·수확 시기 및 경작·재배면적과 제2호에 따른 농업생산활동의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발전사업부지의 사진·영상자료. 이 경우 사진·영상자료에는 촬영 일시 및 촬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재배작물의 종류, 생산량, 판매 또는 자가소비 실적 등 농업생산활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발전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고장·사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20조(준수사항 이행자료) ①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인정, 영농 재개, 대체 작물 재배 또는 피해복구에 관한 자료 3. 인접 농지 피해, 민원, 안전사고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발전사업자는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자료를 종이문서, 전자문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자료를 전자문서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로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작성 일시, 작성자, 대상 필지의 지번, 허가번호 및 수정·삭제 등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진·영상자료를 촬영 일시정보 및 위치정보가 보존·확인될 수 있는 전자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진·영상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때에도 그 원본파일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⑤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서식, 자료 입력항목 및 자료연계 방식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자료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안정적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제도의 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관련한 자료를 구체화하고 인접 농지의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과도한 별도의 자료의 작성이나 새로운 관리 절차의 요구가 아닌 사업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규정하고,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연계 등 사업자에게 맞는 보관 방식을 제시하며 부담 완화 수단을 병행할 수 있어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조항은 준수사항 이행자료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준수사항 이행자료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준수사항 이행자료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준수사항 이행자료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을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준수사항 이행자료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농림수산성은 매년 영농상황 및 수익 등에 관한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

○ 타법사례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 및 제출하도록 규정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준수자료는 종이·전자문서 중 선택하여 보관할 수 있고 사진·영상의 촬영일시·장소 정보도 일반적인 스마트기기로 생성할 수 있음. 정기적으로 기록하는 관리절차를 두면 별도 고가 장비 없이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사업자가 작성·보관한 영농 및 준수사항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전자문서·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사업자가 농업생산활동 준수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중단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등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
- 특히 농업생산활동은 특정 시점의 현장점검만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종합정보지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고,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도입이 필수적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준수사항 이행자료의 작성·보관·제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농업생산활동 및 유지관리 등 관련 준수사항 이행자료 작성 과정에서 일정의 행정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편익) 사업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하는 자료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관련 이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함
- (분석) 관련 자료 작성 및 보관 과정에서 일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과정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객관적인 증명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발전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점검 및 주요설비의 이상여부 확인을 통해 설비의 고장·파손 등을 사전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특히, 누전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며, 농지훼손 및 농업생산활동의 저해를 방지할 수 있음.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은 일반적인 태양광 사업과 달리 동일한 공간에서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이 병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전설비의 적절한 유지·관리는 본 제도의 도입 취지와도 부합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준수사항 이행자료의 작성·보관·제출>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준수사항 이행자료 작성 및 보관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를 작성·보관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기준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준수사항 이행자료 작성 및 보관
편익항목	이행자료 작성·보관에 따른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발전설비의 관리는 농업생산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설비의 이상을 최소화하고 훼손을 조기에 발견·조치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도모함. 또한 이상 또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조치해야할 응급조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주민환원계획의 세부사항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주민환원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환원 재원의 사용 목적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민환원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자원관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계획된 목적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		
	7.규제내용	○ 주민환원계획에 주민환원사업의 집행·정산, 회계 구분관리, 미집행금·잔액 처리, 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수렴, 이해충돌·부정집행 방지 및 실적 증빙자료 보관방법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규제목표	○ 목표: 주민환원 재원의 집행·회계·정산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민환원계획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함 ○ 기대효과: 주민환원 재원의 부정집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주민의 신뢰와 사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주민환원계획의 세부사항 구체화를 통해 재원의 집행까지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계획변경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와 예측가능성 확보 － 주민환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며 주민수용성 증대 및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주민환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주민 회계관리 및 관련 증명자료 작성·보관 등에 따른 사업자의 행정비용 발생 -(편익) 주민환원 재원의 사용목적과 절차를 사전에 구체화하여 환원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확보 -(종합)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의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 주민환원계획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관련 증명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 등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는 주민환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불확실성과 사업자와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또한, 주민환원계획이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관리되지 않도록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집행을 예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따라서 본 규제는 주민환원계획서 내에 포함되어야할 기본적인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에 비해 주민수용성 제고 및 갈등 예방을 위한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 영 제23조제3항제 7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환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민환원사업” 이라 한다)의 집행·정산 절차 2. 발전사업 회계와 주민환원사업 회계의 구분관리 방법 3. 주민환원사업의 미집행금 및 집행잔액의 처리 방법 4. 주민환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및 공개 방법 5. 주민환원사업의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6. 주민환원 실적의 산정 방법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의 보관 방법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주민환원계획의 세부적인 범위(회계관리, 집행잔액, 계획 변경 시 의견수렴 및 공개 방안, 이해충돌 및 부정집행 방지 등)를 규정함으로써 증빙자료 관리 등 최소한의 공통기준 마련을 위한 것임
 - 주민환원계획에 따른 재원의 관리 및 집행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여 지역사회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
	내용	주민환원계획에 따른 집행·정산 절차, 회계, 미집행금 및 집행잔액의 처리 방법, 주민환원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수렴 및 공개 방법,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집행 방지, 증명하는 자료의 보관 방법 등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사업자가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재원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부적정한 집행 방지 - 주민환원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공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주민과 사업자간 이해충돌을 방지함	발전사업자가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는데 시간·비용이 소요됨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도모 및 사업자와 주민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주민환원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또한,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부적정하거나 목적 외로 재원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기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 되는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여, 주민환원 과정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고, 계획 변경 과정 시 주민의 의견수렴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형태양광 사업 추진을 도모함
- 안정적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촌 인구 유입 등 기대

「영농형태양광법」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위임사항	「영농형태양광법」 시행규칙 위임사항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주	제23조(수익의 주민환원)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환원계획에 따라 그 수익의 일부를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기금의 조성·적립·집행 2. 주민의 전기요금, 에너지 효율개선, 마을 공동시설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에너지복지 지원 3. 농로, 배수로, 공동영농시설, 공동 농기계 이용, 공동작업장 등 농업생산기반 또는 공동영농활동 지원 4. 취약계층, 고령농업인, 청년농어업인, 임차농업인, 귀농인 등에 대한 복리·정착 지원 5. 돌봄·교통·보건·교육·문화·안전 등 생활서비스와	제21조(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환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민환원사업”이라 한다)의 집행·정산 절차 2. 발전사업 회계와 주민환원사업 회계의 구분관리 방법 3. 주민환원사업의 미집행금 및 집행잔액의 처리방법 4. 주민환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및 공개 방법 5. 주민환원사업의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6. 주민환원 실적의 산정 방법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의 보관 방법

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 6. 해당 지역 농업인 또는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영농·가공·유통·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7.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정관·규약 및 총회 의결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사업. 다만,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 실적으로 보지 않는다. 8. 그 밖에 주민총회, 조합 총회 또는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주민환원의 대상 지역 및 대상 주민 2. 전력 판매수입, 전력거래 정산금 등 발전사업 수입과 운영·유지관리비, 계통연계·전력거래 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직접 비용을 고려한 환원재원의 산정방식 및 환원 규모의 결정 기준 3. 주민환원사업의 종류, 시행 방법 및 시행시기 4. 주민 의견수렴 및 환원사업 결정 절차 5. 주민환원 실적의 공개방법 6. 회계관리 및 외부검증 계획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발전사업자는 주민환원계획, 주민환원 집행 결과 및 주민환원 재원의 산정 기초가 되는 발전사업 수익·회계 자료	
---	---	--

	를 해당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매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환원계획 또는 주민환원실적이 허가조건에 현저히 못미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환원계획의 수립·변경, 주민총회 또는 주민협의체 운영, 정보공개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환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주민환원계획의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공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
- 주민환원의 실질적인 이행과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은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주민환원 의무가 있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주민환원계획, 별도 회계관리, 정산 및 증빙보관은 법인·협동조합의 기존 회계체계와 통상적인 장부·계좌를 활용할 수 있음.

환원방식과 집행일정을 사전에 정하면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주민환원계획의 집행·정산 및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주민환원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기관은 확인 중심으로 수행하여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본 조항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발전수익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환원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
- 주민환원계획의 변경 등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목적외 사용 및 부정집행을 방지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을 도모함.
- 또한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제시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영농형태양광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비용) 주민환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주민 회계관리 및 관련 증명자료 작성·보관 등에 따른 사업자의 행정비용 발생

-(편익) 주민환원 재원의 사용목적과 절차를 사전에 구체화하여 환원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확보

-(종합)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 요건

주민환원계획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관련 증명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 등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는 주민환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불확실성과 사업자와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또한, 주민환원계획이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집행을 예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따라서 본 규제는 주민환원계획서 내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에 의한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에 비해 주민수용성 제고 및 갈등 예방을 위한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주민환원계획의 작성 및 관련 증명자료 보관
비용항목	행정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주민환원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회계의 구분, 관리방법 및 잔액 처리방법, 계획변경 시 필요한 주민의견수렴 및 공개 방안 등 관련 자료 보관에 따른 일시적인 행정비용 발생이 예상됨 다만, 본 자료는 주민 환원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별도의 전문인력이나 대규모 시설·장비의 구축을 요하는 것이므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활동제목	주민환원계획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및 주민과의 갈등 예방
편익항목	증명자료 작성·보관에 따른 주민과의 정보 비대칭 및 민원 발생 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주민환원계획의 세부사항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목적과 내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주민환원계획의 변경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공개 방법을 포함하며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원상회복계획서의 작성사항		
	2.규제조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3.위임법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16~2026.09.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영농형태양광법 제정('26.6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 허가 및 관리체계 등 도입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과 그에 따른 발전사업자 범위·대상부지 및 사업 기간 등을 정하고, 의무 영농 등 준수사항과 제재처분 등을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원상회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마련을 통해 사업자의 복구 의무를 구체화하고, 원상회복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수적임 － 원상회복을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경우 사업자마다 철거 범위와 농지 복구방법 등 상이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이행을 저해할 수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7.규제내용	- 원상회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원상회복계획서에 철거대상 설비, 철거·복구 방법과 일정, 폐기물 처리, 토양·배수·농업생산기반 복구, 비용 확보 및 영농 재개 가능성 확인방법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농업인 및 발전부지 소재 지역 내 농촌 주민 ○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9.규제목표	○ 목표: 발전설비 철거 후 농지가 실제 농업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함 ○ 기대효과: 발전설비 방치, 폐기물 발생 및 토양훼손을 예방하고 농지의 장기적 보전이 가능해짐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원상회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의 작성 및 보관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 발생 가능 －(편익)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원상회복 비용 미확보, 범위에 따른 이행 지연 방지 및 관계자 간 분쟁 발생 예방 -(종합) 원상회복의 이행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 및 관계자간 분쟁을 예방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종료 또는 원상회복 명령 시 원상회복을 위한 범위, 폐기물 처리계획, 절차 및 일정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상회복이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원상회복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함. 또한,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영향이 없도록 적절하게 회복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본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원상회복 관련 관계자 간 이행충돌 및 갈등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원상회복계획서의 세부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일시적인 행정적 부담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농지의 원상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수단임. 아울러 원상회복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한다는 점에서 규제에 따른 부담과 편익 간 균형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해당없음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원상회복계획서)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거·복구 대상 발전설비 및 부대시설의 종류·수량·위치 2. 철거·복구의 방법, 절차 및 일정 3. 폐모듈, 인버터, 전선, 기초자재 등 폐기물의 처리계획 4. 토양 복원, 배수·관수시설 정비, 농로·농업생산기반 회복 및 인접 농지 피해 방지계획 5. 원상회복 비용 산정내역, 비용 확보방안 및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6. 원상회복 후 농업생산활동 재개 가능성 확인방법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기존 농지전용 중심의 농촌 태양광 사업에 따른 농지 훼손 및 식량안보 위협과 외부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발전수익 유출 등 발생
 - *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누적) : ('15) 2,500ha → ('23) 15,900ha(536%↑)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보급과 농지 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 농업인·농촌 주민 소득 제고 등을 모두 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사업 수요 증대
- 정부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업인 등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도입
 - 식량안보 유지, 난개발 방지, 수익의 내재화(주민환원)의 3가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정연한 도입과 체계적 확산을 이루고자 함
- **(필요성)** 동 조항은 사업 종료 또는 원상회복명령 시 발전설비 뿐 아니라 토양·배수 등 농업생산기반의 적정한 복구를 위해 원상회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 원상회복의 범위와 이행방법을 구체화하고, 실제 농업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농지의 농업생산기반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적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원상회복계획서의 작성사항
	내용	원상회복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철거·복구 방법, 절차 및 일정, 토양 복원, 농업기반시설 복구 등)을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원상회복 범위 등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일관성 보장	발전사업자가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는데 시간·비용이 소요됨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원상회복계획서에 철거 또는 복구 대상 발전 설비 및 부대시설, 방법과 일정, 폐기물 처리계획, 농업기반시설의 회복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며
- 동 조항은 새로운 규제 신설 보다는 상위법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불확실성 해소 및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규정
- 또한, 폐기물의 처리계획, 비용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농업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전문가 회의 2회 (‘26.6.12, ‘26.6.18)	· 농업회사법인 등 발전사업자 참여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내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화 필요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지구 내 사업	하위법령 반영

		관리 중심의 공공 주도형 대규모 발전 사업 유도 필요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등이 선행되어 수확량 감소가 연구된 작물에 대한 재배 제한 해제 필요 · 영농 이행점검(공익직불금)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장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제재 처분 명확성 확보 필요 · 과징금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영농 불이행 판단 기준(위반면적·기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영농이행 점검과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등 발전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농특위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협의('26.8.12)	· 농업회사법인 발전사업 참여로 인한 외부 투기자본의 농지 잠식 방지 필요 · 농지 임차인의 발전사업 참여 확보를 위한 임차농 보호 등 방안 마련 필요	하위법령 반영
농협 조합장, 농협 경제사업부 등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농협 조합장 회의('26.8.31)	· 주민 환원 관련, 마을 자율에 따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영농형 태양광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발전사업 지속을 위해 허가 기간 연장 필요 ·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 유인책 필요 · 영농 이행 의무 지속을 위해 불이행 시 과징금 등 규제는 필요	하위법령 반영

3. 규제목표

- 원상회복명령을 받거나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계획서를 수립하고, 계획서 내에 일정, 기간,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보장 및 안정적인 영농형태양광 제도 운영 목표
- 또한, 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및 원상회복 지연을 방지하고, 계획에 따른 복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영농형태양광법」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위임사항	「영농형태양광법」 시행규칙 위임사항
제13조(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철거·복구의 범위, 방법, 이행기간, 원상회복계획서의 제출기한 및 이행 확인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적 영농 여건, 재해, 폐기물 처리, 토양복구 또는 행정절차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원상회복계획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지원센터 또는 감독대행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원상회복계획서)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거·복구 대상 발전설비 및 부대시설의 종류·수량·위치 2. 철거·복구의 방법, 절차 및 일정 3. 폐모돌, 인버터, 전선, 기초 자재 등 폐기물의 처리계획 4. 토양 복원, 배수·관수시설 정비, 농로·농업생산기반 회복 및 인접 농지 피해 방지계획 5. 원상회복 비용 산정내역, 비용 확보방안 및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6. 원상회복 후 농업생산활동 재개 가능성 확인방법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종료 또는 원상회복명령 시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상회복이 농업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 단순히 발전설비를 철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제도의 도입 목적인 농업 농촌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정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원상회복계획서에 필요한 행정상 기준과 이행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국가표준, 시험·검사 또는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님. 관계 법령의 기존 안전기준을 준용하거나 허가·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원상회복계획서에 관한 요건을 동일한 조건의 모든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업자 수·가격·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 내 경쟁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정은 원상회복계획서에 관한 공통적인 허가·운영·관리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달리 부과하지 않음. 적용 대상은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등 법률상 자격에 따라 정해지고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비용이나 불리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중기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사업전환/승계/폐업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원상회복계획서는 규제 대상의 매출액·종업원 수 등 규모별 통계나 표본자료보다 조문의 적용 대상, 의무내용 및 규제목적에 중심으로 차등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성모델을 적용함.
④ 대상 업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허가 신청인 관련 업종: 농업 및 태양력 발전업	
⑤ 예비분석내용	원상회복계획서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모든 적용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기준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준수내용이나 비용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님. 중소기업에만 별도의 의무나 불리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규모별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영농 지속성·안전·농지보전 등 규제목적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재허가(일시전용허가)가 어려울 경우 해당 농지를 복구하도록 명시

○ 타법사례

-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의무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하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과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철거범위, 일정, 폐기물 처리, 토양복원 및 비용확보 계획은 설비·부지자료를 바탕으로 철거·폐기물 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작성할 수 있음. 사업 종료 전 비용과 일정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원상회복계획서의 철거·복구방법, 비용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원상회복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행정기관의 추가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동법 시행규칙에서 제정하고 있는 원상회복 세부사항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 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원상회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 보전 및 원상회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 특히, 일반적인 발전사업과 달리 농업생산기반의 보전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규제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농업생산기반을 보전하고, 제도 도입 취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된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원상회복계획서의 작성사항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원상회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의 작성 및 보관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 발생 가능
- (편익)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원상회복 비용 미확보, 범위에 따른 이행 지연 방지 및 관계자 간 분쟁 발생 예방
- (종합) 원상회복의 이행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 및 관계자간 분쟁을 예방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종료 또는 원상회복 명령 시 원상회복을 위한 범위, 폐기물 처리계획, 절차 및 일정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상회복이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원상회복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함.

또한,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영향이 없도록 적절하게 회복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본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원상회복 관련 관계자 간 이행충돌 및 갈등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원상회복계획서의 세부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일시적인 행정적 부담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농지의 원상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수단임. 아울러 원상회복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한다는 점에서 규제에 따른 부담과 편익 간 균형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원상회복계획서의 작성사항>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자
활동제목	원상회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작성
비용항목	원상회복 절차 및 일정, 방법 등 계획서 작성에 따른 행정 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사업자가 종료 등에 대비하여 발전설비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작성함에 따라 일시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기존사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자
활동제목	원상회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작성
편익항목	원상회복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행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원상회복 방법, 절차 및 일정 등을 사전에 구체화함으로써, 사업 종료 시 필요한 조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원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 및 관계기관 등와의 이견 및 분쟁을 예방하여 신속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